

현안분석 2010-13

김 정 순



A Study on Legislation for Foreigners'
Acquisition of Nationality and Sojourn

연구자 : 김정순(선임연구위원)
Kim, Jeong-Soon

2010. 11. 30.



I. 배경 및 목적

국경을 초월한 인구 및 자본의 이동 현상

- 국경을 초월한 인구이동, 자본과 문화의 흐름이 국내외적으로 일상화되면서 각국은 불법체류자의 차단, 각국의 경제에 기여하는 기술·능력을 갖는 우수인력의 유치 등 관련 법제도로 외국인 유입에 대처하고 있음

국내 체류외국인의 증가와 사회통합문제

-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도 국내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의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수의 증가,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자격자의 유입 등으로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의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대한 검토와 이들의 사회통합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시대적 변화에 따른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법제적 대응 필요

- 우리나라도 시대적 변화에 따른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책적·법제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됨
- 이에 외국인 이주민의 국적취득 및 체류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함.

II. 주요 내용

□ 외국인 이주민의 국적취득 및 체류 관련 우리나라 법제 현황

○ 외국인의 체류관련

-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여권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나 본보고서에는 「출입국관리법」
- 체류의 자격 및 종류 등
- 외국인 등록
- 영주
- 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취업

○ 외국인의 국적취득관련

- 「국적법」을 중심으로 개관
- 국적취득의 종류, 요건 등
- 복수국적 제도

□ 국가별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 관련 법제 현황

○ 미국, 독일, 프랑스의 법제 현황 개관

□ 현행 외국인 국적취득과 체류 관련 법제 개선방안

○ 결혼이주자의 복수국적의 허용범위확대 검토

- 2010 개정 국적법은 결혼이주자중에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만 복수국적을 허용.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리고 혼인으로 출생한 미성년자 양육자 등의 경우
복수국적 인정 방안 검토 필요

○ 이주민사이의 한국출생자녀의 법적 보호 방안 검토

- 「국적법」상 국적취득의 요건을 완화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이주아동에 대한 국적취득자격 부여 방안의 검토
-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합법적 거주자격 인정 방안 검토.
- 보충적 속지주의의 도입 방안 검토

○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문제

- 미등록이주노동자 때문에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합법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가장 최근인 2003년에 체류 4년 미만의 미등록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합법화한 사례 있음
- 거주기간, 언어능력, 언어강좌 수강, 취학 자녀, 잠재적 기여자 등을 기준으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의 검토 필요

III. 기대효과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인구정책으로서 외국인 이민정책의 입법화의 기초자료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의 입법화의 기초자료
- 사회통합을 위한 외국인 이민정책의 입법화의 기초자료

▶ 주제어 : 외국인이주자, 체류자격, 외국인등록, 영주자격, 국적취득, 복수국적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s

- Capital Flows and Population Migrations beyond National Borders
 - As migrations of people, movement of capital and exchange of culture beyond national borders become commonplace, countries in the world cope with the influx of foreign population by implementing legislation for blocking illegal aliens, attracting talented workforce fully equipped with skills, knowledge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to contribute to the economy of the countries.
- Increase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and issues on social integration
 - As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for a long term in Korea grows larger, it is necessary to review policies on foreigners and issues on social integration. The increase of foreign labor force is caused by changes in labor market environment,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society of Korea. The trend also results from the greater number of marriage immigrants through more international marriages and the entry of overseas Koreans having foreign nationality with working visit visas.
- Necessity of legislative responses demanded by the times to foreign migration population

- Desperate needs of timely, appropriate legislative responses and policies demanded by the times to foreign migration population
- Suggestion of desirable legislative improvements following a close examination of legislations relating to foreign immigrants' acquisition of nationality and sojourn system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II. Main Contents

- Current Korean Legislation relating to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and sojourn of foreign immigrants
 - Relating to foreigner sojourn
 - Focusing on 「Immigration Control Act」 in this research paper from among 「Immigration Control Act」,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Passport Act」, 「Act on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etc.
 - Status and types of stay
 - Foreigner registration
 - Permanent Residence
 - Scope of activities and employment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 Foreigners' acquisition of nationality
 - Overview focusing on 「Nationality Act」
 - Types and requirements for obtaining nationality
 - Dual nationality

- Current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relating to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and sojourn of foreign immigrants
 - Overview on current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France

- Improvement proposals on current legislation relating to the acquisition of nationality and sojourn of foreign immigrants
 - Review to expand the scope of permission for marriage immigrants' acquisition of dual nationality
 - The amended Nationality Act in 2010 prescribes permission only for marriage immigrants who currently sustain their marriage relationship.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ew permission of dual nationality to those whose spouses are deceased or missing and those who are bringing up their children who were born from marriage and are still minors.
 - Review of legal protection of children who were born in Korea
 - Review on granting qualifications for acquisition of nationality to children who are immigrants residing for a certain period by mitigating requirements prescribed by the Nationality Act
 - Review to approve legal residential qualifications by amending the Immigration Control Act
 - Consideration of a plan to introduce complementary territorial principle
 - Legalization of migrant workers
 - Practical review on legalization of migrant workers in order to minimize social expenses caused by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 Recent cases in 2003 in which the legalization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who had stayed only less than 4 years in Korea happened
- Necessity to grant legal sojourn status in consideration of residential period, language competence, whether to take language courses, children attending school, potential contributors, or such

III. Expected Effects

- Fundamental research data for legislation regarding foreigner immigration policy as population policy in preparation for the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 Fundamental research data for legislation regarding foreigner immigration policy for the purpose of enh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 Fundamental research data for legislation regarding foreigner immigration policy for the purpose of social integration

➤ Key Words : foreign migrants, sojourn status, status of stay, foreigner registration, permanent residence qualification, acquisition of nationality, dual nationality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	16
제 2 장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 현황	17
제 1 절 법제현황개관	17
1. 출입국정책관련 법제	17
2. 국적·통합정책관련 법제	21
제 2 절 외국인의 체류 관련	28
1. 체류 일반	28
2. 체류 자격	28
3. 외국인 체류관리업무의 종류	30
4. 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취업	30
5. 외국인등록	31
6. 영 주	31
제 3 절 국적 취득	33
1. 국적취득의 종류	33

2. 국적 판정	38
3. 복수국적 제도	38
제 4 절 소 결	41
제 3 장 외국의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	
현황	43
제 1 절 독 일	43
1. 개 설	43
2.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법제 - 외국인체류법(Aufenthaltsgesetz) - ...	44
3. 외국인의 국적취득 관련 법제	52
4. 소 결	55
제 2 절 미 국	56
1. 개 설	56
3.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련 법제	62
4. 외국인의 국적 취득 관련 법제	76
5. 소 결	82
제 3 절 프 랑 스	82
1. 개 설	82
2.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관련 법제 현황	84
3. 국적취득 관련 법제	97
4. 소 결	100
제 4 장 외국인의 국적 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3

1. 국적취득과 영주권제도의 연계	103
2. 영주권의 확대	103
3. 결혼사증제도 개선	104
4.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문제	104
5. 복수국적제도 관련 개선	105
6. 결혼이주자의 체류제도 개선	107
7. 외국인 이주자의 한국출생 아동의 법적 보호	109
참 고 문 헌	11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경을 초월한 인구이동, 자본과 문화의 흐름이 일상화되면서 한국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2007년에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이 1,000,254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10년 9월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123만7천517명이다.

이처럼 외국인 이민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연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리면 내릴수록 외국인 이민자와 장기체류 외국인의 수는 더욱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과 국제 자유무역의 확대, 동서 냉전의 완화 등 국제적인 환경 변화 등이 이러한 외국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2010년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복수국적의 허용,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신설하는 등의 법적 대처를 해 가고 있다. 그러나 복수국적자의 범위, 영주권의 취득자의 확대 등 여전히 많은 문제가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일찍이 다민족, 다언어로 이루어진 국가(예: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민족국가로 출발하여 근대국민 국가를 이룬 국가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도래가 낯선 경험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도 국내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한 외국노동력의 증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수의 증가,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자격자의 유입 등으로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의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대한 검토와 이들의 사회통합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의 이민에 대해 각 나라는 미국의 911사건, 국제 금융위기, 그리고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하여 출입국관리의 강화, 불법체류자의 차단, 각국의 경제에 기여하는 기술·능력을 갖는 우수 인력의 유치, 언어테스트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을 제도화하는 등 이주민들에 대한 법체계에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또는 이민법 등의 제정·개정, 외국인 관련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바, 우리나라도 시대적 변화에 따른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책적·법제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이주민의 국적취득 및 체류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법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① 외국인 이주민의 국적취득 및 체류 관련 우리나라 법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② 각 나라별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 정책 및 입법 현황을 개관한다. 미국, 프랑스, 독일의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입법 현황을 살펴본다. 각국의 국적법, 이민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③ 우리나라의 현행 외국인 이주민의 국적취득과 체류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제 2 장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 현황

제 1 절 법제현황개관

1. 출입국정책관련 법제

(1) 개 설

우리나라가 이민국가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란이 있지만 2007년에 단기체류 외국인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이 1,000,254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 가운데 91일 이상 체류하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724,967명에 달했다.

2010년 9월30일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123만7천517명이다. 이중 17만1천358명이 불법체류자이다. 국가별 불법체류자 현황을 보면 중국(한국계 포함)이 7만8천783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1만4천946명), 태국(1만2천390명), 필리핀(1만1천243명), 몽골(1만1천81명) 등 순이다. 국적별 합법·불법 체류자수는 중국(한국계 포함)이 58만9천239명, 미국(13만4천361명), 베트남(9만8천977명), 일본(4만7천326명) 등 순이다.

체류자격별 현황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21만10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거주(F-2) 비자, 유학(D-2)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은 각각 13만6천360명, 7만326명이다.

출입국정책관련 법제에는 ① 출입국관리법,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③ 여권법(외교통상부),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2010년 개정 「출입국관리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2010년 개정 출입국관리법의 주요 내용

「출입국관리법」은 최근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도록 하고, 외국인 보호절차를 개선하며, 외국인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 5월 14일에 개정되었고 시행일은 2010년 11월 15일이다. 11장 106개조로 편제되어 있다. 즉,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의 출입국,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등, 제6장 강제퇴거 등, 제7장 선박등의 검색, 제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8장의2 난민의 인정 등,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그리고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으로 구성된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법 제2조제11호 신설)

종전에는 “보호”의 개념이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수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정의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법은 보호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인치(引致)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근거 마련(법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신설, 법 제12조제2항, 법 제28조제5항 신설)

종전에는 모든 출입국자에 대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대면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급증하는 출입국자에 대한 심사절차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개정법은 출입국 심사를 과학화하고 신속한 절차를 마련하여 출입국서비스 개선 등 출입국자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대면심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 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3)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법 제12조의2, 제14조제7항 및 제16조의2제3항 신설, 법 제38조)

종전에는 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는 사람 등만 지문을 찍게 하고 있었는데, 불법입국 방지 및 외국인 신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 신원정보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외국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우범 외국인, 위·변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17세 이상인 외국인은 입국심사 및 외국인등록 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있다.

4) 전문직 종사 외국인력의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제 완화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종전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은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우수 외국인력에게 국내체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유치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법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근무처 변경·추가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사후 신고제로 완화하고 있다.

5) 국내 출생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 연장(법 제23조)

종전에는 국내에서 출생 등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도록 규정하여 그 신청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는 바,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외국인의 체류편의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법은 국내 출생의 경우 자국 공관에서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있다.

6) 외국인의 국적국 영사에 대한 보호사실의 통지
(법 제54조제2항 신설)

종전에는 외국인을 보호하였을 때부터 3일 이내에 보호일시·장소를 가족·변호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국 영사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호된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적국 영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보호된 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 국내 주재 자국 영사에게 보호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7) 보호시설 안에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게시
(법 제56조의9 신설)

종전에는 보호된 외국인은 대부분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바, 보호된 외국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개정법은 보호된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면회·서신 수수·전화통화 및 청원의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8) 난민 심사 중인 사람에 대한 강제퇴거의 집행 정지(법 제62조 제4항 신설)

종전에는 강제퇴거 대상일지라도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보호를 일시해제를 하거나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보하고 있었는데,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공고히 하고 난민인정 신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이에 개정법은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는 사람과 난민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9) 장기보호에 대한 승인규정 신설(법 제63조제2항)

종전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송환할 수 없을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장기보호에 대한 통제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임의적인 장기보호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개정법은 보호된 외국인의 보호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2. 국적·통합정책관련 법제

국적 및 사회통합관련 법제에는 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② 국적법, ③ 다문화가족지원법, ④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여기서는 국적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국적법 연혁

1) 1962년 개정

- 외국인의 대한민국국적 취득시 6월내 원국적 상실 요구
- 국적회복심의위원회의 건의에 의해 해외에서 국적회복 가능

2) 1963년 개정

- 귀화자의 특정 공직(대통령 등) 취임 금지 삭제
- 대한민국국적 취득시 6월내 원국적 상실 않으면 대한민국국적 상실

3) 1976년 개정

- 국적회복심의위원회 폐지: 국내외 국적회복 절차 동일

4) 1997년 개정

- 부모양계혈통주의, 국민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처의 수반취득 및 단독귀화금지 조항 삭제, 국적회복 불허사유 명문화,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국적판정제도 등

5) 2001년 개정

- 모계혈통에 의한 국적취득의 소급효를 20년으로 연장

6) 2004년 개정

- 국민의 배우자의 간이귀화 요건 완화

7) 2005년 개정

- 병역의무자의 국적이탈 제한 및 국적이탈 가능기간 조정

8) 2007년 개정

-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변경 반영

9) 2008년 개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의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

10) 2010년 개정(2010. 5. 4, 일부개정, 시행 2011. 1. 1)

-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아래에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국제 조류와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복수국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병역기피 등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함.
- 주요내용은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 요건 완화(법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법 제10조), 이중국적자의 용어 변경 및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명시(법 제11조의2 신설), 국적선택방식의 개선(법 제13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등(법 제14조), 국적선택명령제도의 도입(법 제14조의2 신설),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제도 도입(법 제14조의3 신설), 공무원의 복수국적자 발견시 법부부장관에의 통보의무(법 제14조의4 신설) 등임.

(2) 2010 개정 국적법 주요 내용

1)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요건 완화

종전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귀화하려면 국내에 5년 이상(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법

에서는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우수 외국인재의 특별귀화요건을 신설하고 있다(개정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2)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① 외국국적 포기의무 기간연장

종전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기간(6개월)이 너무 짧아 기간 내 포기절차를 완료하지 못해 우리 국적이 다시 상실되는 사례가 많아 외국 국적 포기의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있다(동법 제10조제1항).

② 복수국적의 제한적 허용

개정법에서는 외국국적 포기방식과 관련하여 국적취득자 중에서 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자, ③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④ 성년이 되기 전에 해외입양 되어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자, ⑤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이후에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자, ⑥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조제2항).

따라서 특정범위의 외국인이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우리 국적취득 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3) 이중국적자의 용어 변경 및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명문화

개정법에서는 ①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복수국적자에게 국내법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② 또한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조의2 신설).

4)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방식 변경

① 개정전

종전에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선택기간 내에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22세 전에 외국 국적 포기 절차를 마치고 그 증빙을 갖추어 우리 국적을 선택하는 사람이 극히 적어 우리 국적선택이 용이한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다.

② 개정법

개정법에서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3조제1항).

기본 국적선택기간(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와 출생 당시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이른바 ‘원정출산자’)에 대해서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적선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다(동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5)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강화

i) 종전에는 국내외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내에서도 우리 국적의 이탈(=포기) 신고를 할 수 있었다.

ii) 개정법은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동법 제14조),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우리 국적의 이탈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고 병역자원의 유출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6) 국적선택명령제도의 도입

i) 종전에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내에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었다.

ii)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경우 곧바로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지 않고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한 후 그 때에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무통지 자동상실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있다(동법 제14조의2제1항 신설).

iii)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선택할 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가 서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법무부장관이 국적

선택명령을 한 후 그 때에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4조의2제2항 신설).

7)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제도 도입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동법 제14조의3).

8)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개정법은 복수국적을 허용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4조의4).

9)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종전의 국적선택기간 도과로 우리 국적을 자동상실하였던 자에 대해 개정법률 공포 후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우리 국적 재취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우리국적을 선택한 자도 개정법률 공포 후 5년 내에 해당 외국국적을 재취득한 경우에는 우리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부칙 제2조제1항).

② 종전법에 따라 귀화 후 6개월 내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못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유보한 자에 대해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칙 제2조 제2항).

제 2 절 외국인의 체류 관련

1. 체류 일반

체류는 기간에 따라 단기체류(90일 이하), 장기체류(91일 이상), 영주(체류기간 제한 없음)로 구분한다.

2. 체류 자격

체류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외교·공무 체류자격 : 외교(A-1), 공무(A-2), 협정(A-3)
- ② 비영리 단기 체류자격 : 일시취재(C-1),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 ③ 일반 장기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기타(G-1), 구직(D-10)
- ④ 취업 체류자격 : 단기취업(C-4),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항선원(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9.4.3>

1회에 부여하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제18조의2관련)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1. 외교(A-1)	재임기간	18. 무역경영(D-9)	2년
2. 공무(A-2)	공무수행기간	18의2. 구직(D-10)	6개월

제 2 절 외국인의 체류 관련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3. 협정(A-3)	신분존속기간 또는 협정상의 체류기간	19. 교수(E-1)	5년
		20. 회화지도(E-2)	2년
4. 사증면제(B-1)	협정상외의 체류기간	21. 연구(E-3)	5년
5. 관광통과(B-2)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22. 기술지도(E-4)	5년
6. 일시취재(C-1)	90일	23. 전문직업(E-5)	5년
7. 단기상용(C-2)		24. 예술홍행(E-6)	2년
8. 단기종합(C-3)		25. 특정활동(E-7)	3년
9. 단기취업(C-4)		25의2. 삭제 <2007.6.1>	
10. 문화예술(D-1)	2년	25의3. 비전문취업(E-9)	3년
11. 유학(D-2)	2년	25의4. 선원취업(E-10)	1년
12. 산업연수(D-3)	2년	26. 방문동거(F-1)	2년
		27. 거주(F-2)	3년
		28. 동반(F-3)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28의2. 재외동포(F-4)	3년
13. 일반연수(D-4)	2년	28의3. 영주(F-5)	상한 없음
14. 취재(D-5)	2년	29. 기타(G-1)	1년
15. 종교(D-6)	2년	30. 관광취업(H-1)	협정상외의 체류기간
16. 주재(D-7)	2년	31. 방문취업(H-2)	3년
17. 기업투자(D-8)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 5년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기호)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영 별표 1의 17. 기업투자(D-8)의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 2년		

3. 외국인 체류관리업무의 종류

체류외국인 관리업무는 크게 각종 체류허가업무와 외국인등록업무 등이 있다.

체류허가업무에는 ① 체류자격부여, ② 체류자격변경허가, ③ 체류기간연장허가, ④ 체류자격외활동허가, ⑤ 근무처변경·추가허가, ⑥ 재입국허가가 있다.

외국인등록업무는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4. 체류 외국인의 활동범위와 취업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취업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이를 변경코자 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2010.11.15부터 전문인력(E-1(교수)~E-7(특정활동))의 경우 근무처추가 변경이 사후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고용 또는 알선·권유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된다.

5. 외국인등록

장기체류 외국인 및 영주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①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가족, 그리고 ②협정에 의해 외교관과 유사한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자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된다.

6. 영 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¹⁾ 제12조(체류자격의 구분)에서는 국적법 제 10조 제1항의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위임규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28의3’에서 영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의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자는 먼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강제퇴거대상이 아닌 자여야 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①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자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② 국민 또는 영주(F-5)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및 대한민국에서의 출생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한 자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1) 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83호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

④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자

⑥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 있었던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⑦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박사학위증이 있는 자로서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⑧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자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⑨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⑩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⑪ 60세 이상인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수령하고 있는 자

⑫ 방문취업(H-2)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제27호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분야의 특성, 인력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⑬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⑭ 거주(F-2) 카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이다.

제 3 절 국적 취득

1. 국적취득의 종류

(1) 선천적 취득

출생에 의한 선천적 국적취득으로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하고 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출생으로 인한 국적취득은 출생신고에 의하며, 별도의 국적취득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2) 인지에 의한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우리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우리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이고 출생한 당시에 그 부 또는 모가 우리 국민인 경우’ 국적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국적법 제3조). 이 경우는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3) 귀 화

귀화란 우리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귀화의 요건 및 절차를 보면 혈연 등 대한민국 국민과 일정한 관계 여부에 따라 요건에 차이가 있다. 종류는 일반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가 있다.

1) 일반귀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④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⑤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5조).

2) 간이귀화

간이귀화는 일반귀화를 위하여 필요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을 귀화의 요건으로 삼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별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첫째, 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③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둘째,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은 간이 귀화가 허가된다. 그 요건은 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②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③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①이나 ②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의 ①이나 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①이나 ②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3) 특별귀화

현행 국적법은 ① 제7조 제1항에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 입양된 자 제외),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에서 일반귀화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5년 거주’, ‘민법상 성년’, ‘생계유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별귀화의 대상자가 2010.5.4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다.

첫째,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 입양된 자를 제외하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이다.

둘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이다. 법무부가 2010년 9월에 입법예고한 국적법 시행령 제6조는 특별귀화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란 ①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 또는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②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③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셋째,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다. 역시 법무부가 2010년 9월에 입법예고한 국적법 시행령 제6조의 제2항에서는, 우수인재의 특별귀화는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국적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우수인재 대상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또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등이 추천한 사람, ② 공공기관·단체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된 조항은 2011.1.1부터 시행된다.

특별귀화는 신원조회, 적격심사(필기·면접) 후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같은 사항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종 류	요 건	절 차	
		신원조회 (체류동향)	적격심사 (필기면접)
일 반	1. 5년 이상 거주 2. 성년 3. 품행단정 4. 생계유지능력 5.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	신원 조회	필기· 면접
간 이 혼 인	○ 일반귀화중 2. 3. 4. 5. 필요요건 - 혼인상태로 2년 이상 거주	체류 동향 조 사	면 접

종 류	요 건	절 차	
		신원조회 (체류동향)	적격심사 (필가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 후 3년경과 및 혼인상태로 1년 이상 거주 -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 종료 또는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잔여기간 충족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귀화중 2. 3. 4. 5. 필요요건 ○ 3년이상 거주 - 부 또는 모가 국민이었던 자 -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성년 	신원 조회	필가· 면접
특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귀화중 3. 5. 필요요건(거주요건 불요) - 부 또는 모가 국민인 자(입양당시 미성년자 포함)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

4) 수반 취득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제8조 제1·2항).

(4) 국적 회복

국적회복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이탈하였던 자가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9조).

중국동포는 서류위조 등 사례가 있어 경찰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며, 그 외 재외동포는 의심되는 사안만 경찰에 신원조회를 의뢰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5) 국적의 재취득

국적의 재취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상실된 자가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11조). 이 경우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2. 국적 판정

국적판정이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또는 보유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여부를 심사하여 판정하는 제도를 말한다(법 제20조).

실무 현황상 러시아 거주 사할린 동포(외교통상부장관이 영주귀국 허가)와 중국 거주 북한적 동포가 주요 대상이다.

3. 복수국적 제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적법은 제한적인 복수국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먼저 용어를 이중국적자에서 복수국적자로 변경하였으며, 복수국적자는 국내법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된다. 그러나 관계 법령상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1) 대 상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1년 이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

동조의 제2항에서 일정한 사람들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포기가 아니라 불행사 서약만으로도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및 보유가 가능토록 하여,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제도를 도입하였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의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 ① 혼인상태를 유지하면서 귀화허가 받은 결혼이민자
- ②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 ③ 해외입양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자
- ④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65세 이후에 국내에 귀국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동포
- 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종전의 외국국적을 포기하려 하여도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의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 등이다.

(2) 복수국적의 예외

원정출산으로 인해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이 된 자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국적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적선택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의 행사를 포기한다는 서약을 한 후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조 제3항에서는 출생 당시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출생한 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원정출산자녀에게는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원정출산자란 광의로는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를 의미한다. 개정 국적법에서는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협의의 원정출산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법무부가 2010년 9월에 입법예고한 국적법 시행령(안) 제16조의2에서 법상의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를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고 구체화하고 있다.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란 기본적으로 출생 당시에 모가 해당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① 자녀의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② 자녀의 출생 전후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③ 그 밖에 자녀의 출생 당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유학, 해외근무 등 사회통념상 수긍할만한 사유로 체류하는 등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의 예외가 인정된다.²⁾

(3)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제도

개정 국적법 제14조의 3에서는 선천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고, 복수국적자가 ① 국가안보, 외교관계, 국민경제 등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 복수국적자로서 복수국적을 보유하기에 현저히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

2010년 9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국적법시행령(안) 제18조의3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제 14조의3제1항에 따른 청문 대상자는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 이주·동포 정책연구소 편집부, “복수국적 허용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국적법』 일부시행안 바로 시행”, 『미드리』 제2호(2010년 6-7월호), 58쪽-65쪽 참조.

법무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14조의3제1항제2호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① 법무부령이 정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②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의 청문절차에 관하여는 청문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제 4 절 소 결

우리나라도 이주민의 인구가 2007년을 기점으로 백만을 넘어서고, 이제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고자 특히 외국인의 체류 및 국적취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입국관리법(시행 2010.11.15, 2010. 5.14 일부개정)과 국적법(시행 2011. 1. 1, 2010. 5. 4 일부개정)이 개정이 되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도록 하고, 외국인 보호절차를 개선하며, 외국인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이 되었다. 특히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하여 법 제 21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하였다. 즉,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근무처 변경·추가에 사전 허가제를 사후 신고제로 완화하였다.

또한 법 제23조의 개정을 통하여 국내 출생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 공관에서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한 것이다.

이외에도 법 제54조제2항을 신설하여 보호된 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 보호외국인의 국적국 영사에 대하여 보호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자국 영사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보호된 외국인의 인권 보장 및 권리구제 실효성의 제고 논의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내용에는 불법 취업자의 증가 경향에 따른 불법체류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규정이 포함되고 있지 않고 있다.

개정 「국적법」은 국적에 관한 여러 사항들 중에서 우수인재의 귀화를 용이하게 하고, 복수국적제도와 특정한 경우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상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요건을 완화하여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재의 경우 국내 거주기간 요건에 관계없이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우수 외국인재의 특별귀화제도를 신설하였다.

또한 제한적인 복수국적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범위의 국적취득자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만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여, 특정범위의 외국인이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우리 국적취득 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이주자에게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주자에게만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주노동자에게는 귀화 등의 가능성이 배제되고 있는 점,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의 지위를 확고하게 해줄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점, 복수국적취득자에게서 대한민국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이를 통한 국적법의 개정 및 법시행령의 마련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장 외국의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 현황

제 1 절 독 일³⁾

1. 개 설

독일의 이민정책은 사민당(SPD)-녹색당/연합 90(Grüne/Bündnis90)의 연합정부(1998-2005)가 들어서면서 눈에 뜨게 발전하였으며, 새로운 정책에 상응하여 외국인법제에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독일이 기존에 견지하여 왔던 독일이 이민국가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선회하여, 독일이 이민국가임을 선언함과 더불어 이민자, 혹은 이민배경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의 정비를 하였던 것이 이러한 변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정부가 2006년 7월 “좋은 공생 - 명확한 규율(Gutes Zusammenleben - klare Regeln)”이라는 제목으로 공포한 이주법(Zuwanderungsgesetz)의 선언문(Erklärung)에 따르면 새로운 이주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외국인의 체계적인 사회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주된 내용은 독일사회와 이주민이 사회적 통합을 위해 예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주법 제1조를 이루는 외국인체류법(Aufenthaltsgesetz)을 통하여 독일 연방공화국의 영토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체계적인 사회통합을 위하여 의미 있는 발전이 이루어 졌다. 독일연방정부는 외국인 이주민들의 독일어 능력 향상과 그들에게 독일의 법제, 문화, 역사 및 국가에 관한 일반적 사항들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책임을 천명한 바 있다. 독일정부는 독일사회에 새로이 온 이주민들

3) 신옥주, “독일의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각국의 법제 현황과 과제』(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2010.11.23), 주제발표문을 발췌 및 정리한 것이다.

이 독일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도록 권고하는 한편, 독일사회 역시 그들을 흔쾌히 수용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체류자격을 단기·영구체류로 단순화하고, 체류제도를 귀화와 연결된 제도로 운영하며, 또한 귀화를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이민정책의 변화는 국적법상 국적 취득에서도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종족적 배제주의를 고수하며, 국적취득에 있어서 오랫동안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었던 독일은 2000년 국적법의 개정을 통해 출생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배타적 속인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로 거론되는 나라에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속지주의를 적용하는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독일의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외국인의 체류에 관한 법제 - 외국인체류법(Aufenthaltsgesetz) -

독일에서는 외국인의 지위 및 생활조건에 관한 법률적 토대의 중심으로 이주법(Zuwanderungsgesetz)⁴⁾이 새로 2004년에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발효 중이다.

동법은 소위 “조문법(Artikelgesetz)”라고 불리며, 2004년 6월 30일에 제정 되었다. 총 15조(Artikel)로 되어 있는데 제1조 외국인체류법(Aufenthaltsgesetz)⁵⁾, 제2조는 EU의 거주이전의 자유권(Freizuegigkeitsgesetz)

4) Gesetz zur Steuerung und Begrenzung und zur Regelung des Aufenthalts und der Intergration von Unionsbürgern(Zuwanderungsgesetz) vom 30. 07. 2004, BGBl. I S. 1950. 원래 이 법안은 2002년 12월 연방상원과 하원에서 가결이 되었다. 그러나 상원결의 당시 브란덴부르크주의 불명확한 투표절차를 이유로 연방헌법재판소가 2002년 12월 18일 위헌결정(Zuwanderungsgesetz nichtig: BVerfG 2 BvF 1/02)을 하였다. 판결의 내용은 <http://www.jur-abc.de/cms/index.php?id=419> 참조. 그 후 양원에서 이법을 놓고 다시 논의가 재개되었고, 경기침체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법의 내용을 놓고 어려움을 겪다가 2년이 더 흐른 뒤 2004년 8월 5일 공포, 2005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5) 동법을 통하여 그동안 존재하여 왔던 외국인법(Ausländergesetz)이 폐지되고 동법으로

에 관한 법⁶⁾ 및 여타 많은 개별법들로 이루어진 것이다.⁷⁾ 동법은 연방정부에 대하여 연방정부법규명령을 제정할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⁸⁾

‘외국인체류법’은 이주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본명은 ‘연방에서 외국인의 체류, 직업활동, 통합에 관한 법’이다. 동법은 기존의 ‘외국인법’을 폐지하였으며, 외국인의 체류국과 외국인 상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국제법적 기준은 물론 유럽법과 독일 기본법에서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수준보다 더욱 폭넓게 법제화하고 있다.

동법은 방대한 분량으로 총 10장 105조(§)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및 취업자의 이주에 관한 새로운 규정들 이외에 기존 외국인 관련법 규정들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외국인의 체류목적에 관한 사항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거주허가와 기간이 정해진 체류허가의 두 가지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체류허가와 노동허가는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행해지도록 하여 기존의 이중적인 허가절차가 단일의 허가절차로 변경되었다. 체류허가는 노동관련 행정기관이 노동허가에 동의할 경우 외국인 관련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하 동법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체되었다. 동법은 별도의 법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주법의 제1조이다. Gesetz über den Aufenthalt, die Erwerbstätigkeit und Integration von Ausländern im Bundesgebiet(Aufenthaltsgesetz - AufenthG).

6) Artikel 2: Gesetz über die allgemeine Freizügigkeit von Unionsbürgern (Freizügigkeitsgesetz/EU - FreizügG/EU).

7) 동법의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관련된 개별법들을 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3조에서는 단일적인 은 유럽연합의 체류 및 난민법상의 지침의 전환 적용을 위해 제정된 2007년 8월 28일에 효력을 발생한 법률(Das Gesetz zur Umsetzung aufenthalts- und asyrechtlicher Richtlinien der Europaeischen Union)에 따라서 귀화에 관한 법규 몇 개가 ‘Rü츠독 zum einheitlichen Verordnung’이라는 제명으로 규정 되었다. <http://www.zuwanderung.de/2-zuwanderungsgesetz.html>.

8) <http://www.agah-hessen.de/Themen/Recht/Zuwanderungsgesetz/ZuwanderungsgesetzUebersicht.pdf>

(1) 체류·영주에 관한 규정

1) 체류허가(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

외국인체류법 제7조에서 체류허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간을 정하여 체류를 위한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체류의 목적에 따라 각각의 유형에 대한 규정과 법적 효력은 구분되고 있다.

2) 영주허가(unbefristete Niederlassungserlaubnis)

이는 기간의 제한 없는 체류, 영주를 위한 허가를 말하는 것으로 기간과 체류장소의 제한이 없으며 여타의 부관에 의한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된다.

외국인체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허가를 얻은 지 5년이 지난 외국인에 대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드시 영주허가를 내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체류허가를 얻은 후 5년이 지나야 한다.

② 외국인이 “그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의 “생계보장”이란 외국인이 공적인 부조 없이 의료보험을 포함하는 충분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자녀수당, 자녀지원금, 자녀교육수당, 부모수당 및 독일 영토 내에 체류케 할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불되는 여타의 특별 공적부조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동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이 그 어떤 것이든 하나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설치, 운영되는 의료보험에 의해 의료보장이 되어 있을 때만” 충분한 의료보장이 된 상태로 보고 있다. 또한 체류허가의 발부 또는 연장함에 있어 가정의 수입을 위한 전체 가족 구성원의 분담이 고려가 된다.

③ 사회보험에서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 외국인이 거주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적 보험

회사에 가입하여 최소한 60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험금을 납입하거나 혹은 법적 근거 하에 설치된 연금보험에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주거공간을 확보해야한다. 거주허가신청자는 그 자신 또는 그와 함께 주거할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충분한 주거공간의 요건”은 어떤 거주공간을 필요로 하는 자가 공적으로 제공되는 사회임대주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주거공간은 독일의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규정에서 요구되는 것과 동일하다. 두 살 이하의 어린이는 가족에게 요구되는 주거공간의 면적 내지 요건을 계산하는데 고려되지 아니한다.

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필요로 인해 외국인의 범규범 준수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테러의 위험이 증대하고 있는 시대에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높은 과 정치 및 사회에서 질서확립의 책임을 지는 책임기관의 시각에서 볼 때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대한 고려는 외국인 관계법상 거주허가 또는 외국인사회통합 조치를 수행하는데 있어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어떤 경우라도 거주허가의 신청은 거부될 수밖에 없다.

⑥ 사회적·국민적 통합의 징표가 요청된다. 새로 구성된 외국인법에서의 특별한 시도는 거주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인이 충분한 독일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과 그가 법과 사회질서 및 독일연방 영토 내에서의 생활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적인 고려의 요소로 하고 있는 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동법률의 제정자는 외국인이 이상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켰는가와 그럼으로써 “그의 사회통합의 과정이 실효적으로 이행되었는가”에 관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2) 우수외국인 유치에 관한 법제

1) 외국유학생의 잔류허용

외국인의 노동을 위한 입국과 고용 등에 관해서는 체류법(AufenthG) §§ 18, 19와 고용명령 (regelt die Beschäftigungsverordnung (BeschV))에서 규율을 한다. 허가는 통상 BeschV에서 열거하고 있는 직업 예컨대 Au Pair; Spezialitätenköche; Wissenschaftler an öff. Einrichtungen; Journalisten 등에게 주어진다.

BeschV는 또한 수학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이들이 수학을 종료한 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들은 수학 후 최대 12개월 동안 적합한 직장을 찾을 수 있다 (§ 16 Abs. 4 AufenthG). § 27 BeschV에 따라 Vorrangigkeitsprüfung은 적용되지 않는다.⁹⁾ 직업아젠투어(Arbeitsagentur)는 단지 직업과 봉급이 수준에 알맞은지만 심사한다. 최장 12 Monate의 구직기간 동안과 학업기간동안은 학생들은 일년에 90 전일/180 반일의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다(§ 16 IV Satz 2 AufenthG).

2009년 1월 1일부터 § 27 BeschV은 독일의 대학을 졸업한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이들이 수업 이후 독일을 이미 떠났거나 이미 오래 외국에 살고 있었어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들은 그들의 졸업에 적합하고 구속력이 있는 직업의 제안을 증명할 수 있으면, 노동의 목적으로 비와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외국인 전문인력의 유치

사민당(SPD)-녹색당/연합 90은 IT전문가들이 독일 내에서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과학 분야의 인재들을 비 유럽연합 및 스위스권역에서 유입하기 위한 정책을 폈다. 이것이 2000-2004년까지 존속

9) Von Okt. 2007 bis Dez. 2008 regelte dies die Hochschulabsolventen-Zugangsverordnung HSchulAbsZugV, seit Jan. 2009 die BeschV

했던 “IT-인력 수급을 위한 긴급프로그램(Sofortprogramm zur Deckung des IT-Fachkräftebedarfs)”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Greencard’제도¹⁰⁾를 도입하였다. 그 근거 법령은 2000년 8월 1일에 발효되었던 “Verordnung über Aufenthaltserlaubnisse für hoch qualifizierte ausländische Fachkräfte der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ologie (IT-ArGV)”이다. 이 유럽 연합회원국 국민과 스위스인이 아닌 IT 전문가는 Greencard제도의 범주 내에서 특정한 조건이 결부된 5년 체류허가 및 노동허가를 받는다. 이 제도를 통하여 이 시기에 17,931명의 IT-Experten이 독일로 유입되었다.

IT-인력 수급을 위한 긴급프로그램은 2004년에 종료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2004 이주법에서는 IT-Fachkräften이 특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독일에 이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독일의 Greencard 제도는 미국의 동일한 명칭의 제도와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첫째, 이 제도는 5년(최대 8년)의 체류허가를 준다는 점이다. 둘째, 목적그룹을 매우 명확하게 정하여 이 Greencard는 상응하는 대학졸업자이거나 최소 50,000Euro를 버는 IT-영역의 전문가에게만 주어진다. 셋째, 그 숫자가 처음에는 10,000명으로, 그리고 시행 일년 후에는 20,000명으로 정하여져 있었다.

Greencard제도를 통하여 독일로 유입된 전문인력은 Informatiker/innen 또는Elektroingenieure/innen였으며, 국가 별로는 Indien, Osteuropäer, Äthiopier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이들 중 다수가 다시 고향으로 귀국을 하였다.

2004 이주법과 더불어 “Greencard-Verordnung”은 실효되었다. 이주법 제1조를 이루는 외국인체류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IT Fachkräfte들을 필요에 따라 외국에서 수급할 수 있으며, 이들은 영주권을 취득할

10) ‘Greencard’ 제도는 독일 내에서 매우 심한 토론을 촉발하였는데, 기업인들은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Jürgen Rüttgers (CDU)는 “인도인들 대신에 (우리)아이들을(Kinder statt Inder)”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반대하였다.

수 있고, 그 숫자에 대한 제한도 없다. 2009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은 모든 학문분야에까지 확장되어 적용된다.¹¹⁾

3) 투자이민조건의 완화

자영업자가 독일에서 체류허가를 얻으려면 최소한 1백만 유로를 투자하고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어야 하였다. 그러나 이 숫자들은 모두 절반으로 완화되어 50만유로와 5개의 일자리로 완화되었다.

(3)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규정

1)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근거규정

외국인의 사회통합은 이주법 제3장에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 규정은 상위 개념인 통합(Integration)이라는 제목 하에 규율되고 있다. 외국인의 사회통합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44조는 노동 촉진법에서 그간 잠정적으로 반영하고 있던 촉진수단들을 포괄하고 있다. 즉, 동조는 “독일연방의 영토 안에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독일의 경제, 문화 및 사회적 생활관계에 걸친 사회통합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동법에 따라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은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지원이 되어야 한다. 동법에서 말하는 외국인 사회통합의 목표는 “외국인들에게 독일어, 독일의 법질서, 문화 및 독일의 역사에 관하여 효과적으로 교육”하는데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외국인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실제적인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소위 자조적인 능력을 배양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외국인사회통합 교육과정은 구조적으로 두 과정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독일어교육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독일의 법질서, 문화 및 역사

11) [http://de.wikipedia.org/wiki/Greencard_\(Deutschland\)](http://de.wikipedia.org/wiki/Greencard_(Deutschland))

에 관한 지식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이다. 외국인들은 최소한의 지식수준을 달성할 의무가 있다. 독일 연방내무부에 속하는 ‘연방 이주자 및 망명자 행정청(Bundesamt fuer Migration und Pflichtliger)’가 외국인의 사회통합과정을 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2) 사회통합에의 비협조 및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외국인은 자발적으로 사회통합을 요구하거나 사회통합의 의무를 지는 형태로 사회통합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참가의무에는 강제적인 제재수단이 수반된다.

외국인체류법 제8조제3항에서는 “어떤 외국인이 동 법 제44a조제1항제1문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류허가 결정시 참조해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인이 사회통합과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거부했을 경우 받는 불이익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사회통합과정참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체류허가 신청권이 부인되고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체류연장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외국인과 후발이주민의 통합코스를 위한 명령(이하 “통합코스명령”이라 한다)¹²⁾은 2004 외국인체류법 제43조 제4항과 2004년 외국인체류법 제65조를 통해 개정된 연방추방자법(Bundesvertriebenengesetzes) 제9조제1항제5문에 근거하여 연방내무부령으로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총 4장 23조의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참여, 정보의 처리, 통합코스비용, 제3장 통합코스의 구조, 기간, 내용, 제4장 코스참가자(Kursträger)의 허가, 제5장 경과규정,

12) Ver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von Integrationskursen für Ausländer und Spätaussiedler (Integrationskursverordnung-IntV). Es verordnen auf Grund des § 43 Abs. 4 des Aufenthaltsgesetzes vom 30. Juli 2004 (BGBl. I S. 1950) die Bundesregierung und auf Grund des § 9 Abs. 1 Satz 5 des Bundesvertriebenengesetzes, der durch Artikel 6 Nr. 3 Buchstabe a des Gesetzes vom 30. Juli 2004 (BGBl. I S. 1950) eingefügt worden ist, das Bundesministerium des Innern.

효력발생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통합코스는 외국인과 후발이주자의 독일어 지식 습득과 독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 법규, 문화, 역사, 특히 독일 연방공화국의 민주적인 국가정체, 법치국가, 평등, 관용, 종교의 자유의 가치의 습득에 기여함(통합코스명령 제3조제1항)을 지향하며, 제1항의 독일어 습득의 목적은 참여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이웃과 언어로 알맞게 표현하고, 그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알맞게 대화하며, 서면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달성된다(동명령 제3조제2항).

3) 외국인의 사회통합촉진: 사회통합촉진 프로그램

외국인의 사회통합과정은 연방과 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특히 사회교육적이고 이주민에게 별도로 제공되는 지도프로그램들에 의해 보충되어진다. 연방내무부나 그의 위임을 받은 기관들은 연방 전역에 시행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가 있다. 동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각 주와 지방 자치단체 및 민간 봉사단체의 참여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노동조합, 기업과 단체, 기타 복지·봉사 단체 및 다양한 이익단체의 참여도 있었다.

3. 외국인의 국적취득 관련 법제

국가의 특수성에 기반한 시민권의 분류유형으로 캐슬스와 밀러의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족적, 또는 배제적 모델이 있다. 이민자와 그들의 2, 3세의 공동체 접근을 거부하거나, 그러한 접근을 막는 제도적, 문화적 장벽을 설치하여 국가가 원치 않는 인자자의 유입을 차단하는 모델로 과거 속인주의를 택했던 독일이 대표적인 국가로 꼽혔다. 둘째, 동화주의, 혹은 공화주의모델이 있다. 프랑스가 대표적이며, 속지주의에 입각하여 국적 취득이 용이하나 공적영역에서 만큼은 이민자의 정체성 탈피를 요구하고 국적국의 문화를 요구하는

특징이 있다. 셋째, 다원주의 모델이 있다. 국적취득이 용이하고, 소수 민족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권리를 광범하게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특징이 있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랄리아, 영국, 네덜란드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¹³⁾

이처럼 외국인에 대하여 배타적 성향이 강했던 독일에서 국적취득에 관한 큰 변화는 2000년의 국적법을 개정하여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5년의 이주법 제5조인 “국적법 개정법(Artikel 5 Änderung des Staatsangehörigkeitsgesetzes)”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변화가 있었다. 이주법의 제5조 국적법개정법 제1항은 “동법상의 독일인은 독일국적을 소지한 자이다”라고 하면서 기존 국적법상의 독일인 개념을 개정하였다.

기본법 상의 독일인 개념은 제11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국적법 상의 귀화규정이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 언급될 필요가 있는데 독일은 국적법의 개정을 통해 보충적으로 속지주의를 도입하고, 귀화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2000 국적법¹⁴⁾의 주요내용

1) 복수국적제도의 도입

국적법 제4조에서는 제1항의 독일인의 자녀가 출생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 이외에 제3항에서 출생으로 인한 국적취득의 속지주의를 도입함으로써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국적취득과 관련된 개정 국적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모 한 쪽이 ① 8년 이상 합법적으로 독일 국내에 통상적인 거소를 가지거나

13) 고상두·하명신, “다문화 시대 독일의 시민권 변화”, 『국제정치논총』 제50집 1호, 2010, 424쪽.

14) Staatsangehörigkeitsgesetz(StAG), Ausfertigungsdatum vom 22. 07. 1913. 최후 개정일 2009. 5. 2. BGBl. I S. 158.

② 단기체류허가 또는 3년 이상의 장기체류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부모의 아동은 독일 국내에서의 출생을 통해 독일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에 대하여는 독일 내에서 기본법적인 관점 및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비판¹⁵⁾이 있으나, 동 개정을 통하여 독일 전통적으로 취하고 있던 혈통주의를 벗어나 출생지주의를 취하게 되었으며, 이는 독일국적법 실제에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부모의 중단 없는 체류 및 독일 내에서의 출생이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다. 이 조건을 충족한 경우, 부모는 그 자녀의 독일국적 취득을 거절할 수 없다. 그 자녀는 만 23세에 달하면 석명의무가 발생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석명이 없으면 독일국적이 상실된다.

국적법 제40b조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10세 미만으로 독일 내에서 합법적으로 통상적인 체류를 하고 있는 아동들은 귀화를 통하여 독일국적 취득청구를 할 권한이 있다.

(2) 귀화(Einbürgerung)요건의 완화

외국인의 귀화와 관련하여 국적법의 개정 전까지는 23세 이하의 외국국적 독일 거주외국인은 생계증명 없이 귀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하여 이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실업수당 II를 수령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충족시킬 때에만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귀화의 요건은 국적법 제10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8년간 독일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다음과 같은 국민적·정치적 요건을 충족시키면 성립된다.

즉, ① 외국인이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상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인정하고 그 스스로 이와 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연방 및

15) 기본법적 개관은 <http://de.wikipedia.org/wiki/Zuwanderungsgesetz>과 이종수, “최근의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논의에 관한 비교법적 시론”,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1호, 2009.2 참조.

주의 존립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충족된다. ② 또한 연방과 주의 헌법기관들의 업무에 비합법적으로 영향을 주는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며, 국내질서를 교란하고 연방정부의 대외적 이해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과 그와 같은 행위를 과거에도 하지 아니하였음을 표명하여야 한다.

iv) 귀화테스트와 귀화과정을 위한 명령¹⁶⁾은 국적법에 따라 독일전체에 통일적인 귀화테스트를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귀화테스트는 독일전체에서 통일적인 설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60분 동안 총 33문제 중 17문제를 맞게 답하면 귀화테스트에 합격하게 된다.

4. 소 결

이민 혹은 외국인정책은 한 나라의 국내외의 경제, 정치적 상황 및 국민의 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이다. 오랫동안 보수적인 이민자정책을 펴왔던 독일이 2008년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주민 관련법제를 혁신적으로 정비한 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우리나라도 영주권제도를 확장하고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통합코스를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동화적 통합이 아니라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통합교육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직기회를 제공하고 영주권 또는 국적취득의 문을 넓혀 우리나라에 정주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6) Verordnung zu Einbürgerungstest und Einbürgerungskurs(Einbürgerungstestverordnung-EinbTestV) vom 5. August 2008, BGBl 2008 I Nr. 35, Bonn, 8. Aug. 2008.

제 2 절 미 국¹⁷⁾

1. 개 설

2001년 9월 11일 사태(이하 “911사태”라 한다) 이후, 미국은 외국인 출입국 및 국적(시민권) 취득에 관한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대테러전에 돌입하는 외국인 이민 관련 입법 정책을 폈다. 이로 인한 미국 이민법 또는 이민 법제¹⁸⁾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2002년도에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을 제정하여,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설립,¹⁹⁾ 그동안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이민국(Immigration and Nationalization Service, INS)’에서 주로 담당해 왔던 ‘이민(immigration)’과 ‘국적 취득(nationalization)’에 관한 업무를 국토안보부에서 총괄하여 관장하게 되었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출입국 단계에서, 또는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의지를

17) 최영관, “미국의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각국의 법제 현황과 과제』(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2010.11.23), 주제 발표문을 발췌 및 정리한 것이다.

18) 미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민에 관한 기본법은 1952년에 제정된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 (이민 (및) 국적법, INA)’을 통칭하기도 하며, 외국인의 출입국 및 국적 취득에 관해 규율하는 기본법이다. 이 법은 통상 ‘이민법’으로 번역이 되고 있으며, 1952년 제정 이후 다른 법의 제·개정 에 따라, 이민법의 해당 조항이 지속적으로 변경이 된다. 1990년의 ‘Immigration Act of 1990,’ 2002년의 국토안보부 법 등에 의해서 1952년 이민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또한, INA제101(a)(17)조는 “immigration laws(이민법들)”은 “INA와 외국인에 관한 이민, 배제(exclusion), 추방(또는 국외 이송, deportation), 축출(expulsion), 제거(또는 국외 추방 removal) 등과 관련된 미국의 모든 법, (국제)협약, 조약을 포함한다”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The term “immigration laws” includes this Act and all laws, conventions, and treaties of the United States relating to the immigration, exclusion, deportation, expulsion, or removal of aliens. INA Sec. 101(a)(17).

19) John E. Finn, “Counterterrorism Regimes and the Rule of Law: The Effects of Emergency Legislation on Separation of Powers, Civil Liberties, and Other Fundamental Constitutional Norms,” in *The Consequences of Counterterrorism*, ed. Martha Crenshaw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2010), 37.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종전의 이민국과 ‘관세청(U.S. Customs Service)’을 통합하여, 이민과 관세업무를 총괄하면서, 이민업무는 국토안전부의 산하 기관인 ‘시민권 및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이하 USCIS)과 ‘이민 및 관세 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이하 USICE)’에서 다루고 있다.²⁰⁾ USCIS는 합법적인 이민 사안을 다루는데, 시민권 취득을 위한 귀화 신청, 가족초청 이민, 취업 이민, 난민 등의 이주문제, 시민권 취득자의 교육 및 미국사회로의 통합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시민권 취득과 이민에 관한 제반 법규를 제정한다.²¹⁾ USICE는 국토안보부의 주요 조사기관이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두 번째로 큰 조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²²⁾ INS와 관세청(U.S. Customs Service)에서 담당해왔던 이민과 관세 관련 조사와 집행 기능을 2003년 이후 부터는 미국 내외의 불법이동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ICE내 부서를 두고 이민 범죄, 인권침해, 밀입국, 기타 관세 위반행위 등에 대해 조사를 한다.²³⁾

이와 같은 9-11사태 이후의 이민 정책의 급격한 변화, 즉 외국인 출입국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는 바로 미국의 이민 정책이 자국의 안보, 국제 정세 등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례이다. 미국의 이민 정책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인의 국내 수요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가족초청 이민, 난민 수용 등 인권 보호차원의 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민 정책은 미국 이민법 개정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20) <http://www.dhs.gov/xabout/structure/>.

21)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extoid=2af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vgnextchannel=2af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

22) <http://www.ice.gov/about/overview/>.

23)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ttp://www.ice.gov/about/offices/homeland-security-investigations/>

2. 이민법제와 주요 내용

(1) 개 관

미국 이민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1952년에 제정된 「이민 및 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이다. 이는 미국법(U.S. Code)의 제8편(Title 8) ‘외국인과 국적(Aliens and Nationality)’편에 편제되어 있으며, 연방 행정기관의 이민 관련 세부적인 시행 법규, 절차 등의 내용은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제8편(Title 8)에 실려 있다.²⁴⁾ 「이민 및 국적법」은 이후 수차례 개정되는데, 가장 주요한 개정으로는 1990년 「이민법 (Immigration Act of 1990)」이 있고,²⁵⁾ 이외에도 1986년 「이민개혁 및 통제법 (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 1996년에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IIRIRA) of 1996)」과 「반테러 및 실질적 사망 처벌법 (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AEDPA) of 1996)」 등을 통한 개정이 있었고, 2002년의 「국토안보법」의 개정이 있었다.²⁶⁾ 이러한 이민법 개정은 주로 불법 이민을 통제하고,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이민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다.

(2) 1952년 「이민 및 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1952년의 「이민 및 국적법」의 주요 이민 정책은 출신국가별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정책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미국 내의 이민자의 출신국을 고려하여, 유입된 이민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로부터의 이민

24) 의회를 통해 제정된 법은 해당 연방기관에서 발행하는 행정 규칙(시행령 등)에 의해 해석되고, 시행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총괄하여 게재해 놓은 법령집이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이다. <http://www.uscis.gov>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 ‘Laws’ 메뉴 참조).

25) <http://www.dhs.gov/files/laws/immigration.shtm>.

26) <http://www.dhs.gov/files/laws/immigration.shtm>. “Public Laws Amending the INA” 사이트에 1986년 이후의 개정된 이민 관련법이 열거되어있다.

은 제한하고, 이민자수가 적은 국가의 이민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정책으로, 출신국가를 다변화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이민자의 자질에 근거한 이민자 배제정책도 그대로 받아 들여 우선순위 이민자는 미국경제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외국인을 우선 받아들였다.²⁷⁾

그러나, 1952년의 이민법은 출신국가별 인원수를 산정할 때, 1920년대 인구조사에 근거하였으며,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1965년 법 개정을 통해, 출신국 인원수를 각 국가별로 공평하게 2만 명으로 정하고, 이민자 우선 제도도 가족을 먼저 고려하고, 이민자의 능력을 고려하는 순위로 정해지게 되었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경우 제한 없이 미국 이민이 가능하게 되었고, 미국 시민권자의 미혼자녀가 제1 순위,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가 제2 순위이고, 이밖에 특출한 재능을 지닌 외국인 등에 대한 이민 우선권을 부여하였다.²⁸⁾

(3) 1986년 「이민개혁 및 통제법(IRCA)」

1980년대에 불법체류자가 2백만 명을 넘어,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함에 따라 1986년에 「이민개혁 및 통제법(IRCA)」이 제정되었다.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고용주를 단속하는 규정으로 ‘고용확인제도(employment verification system)’를 두어 불법 이민자인 줄 알면서 법을 위반하고 불법 외국인을 고용했을 경우 고용주를 처벌하는 한편, 1982년 1월 이전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를 사면시켜 합법 이민자로 전환시키는 프로그램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다.²⁹⁾ 이민 신청 등록 순위에 따라 이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두었고, 또한 획기적인 제도로는 ‘비자복권 제도(Visa Lottery Program)’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별 할당 인원수의

27) Weissbrodt, 15-17.

28) Weissbrodt, 16-18.

29) Weissbrodt, 21-27. 사면제도는 1987년 5월에서 1988. 4월까지 사면 신청을 한 불법체류자에게 임시 거주자격을 준 후, 18개월 이후 영주권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25%에 못 미치는 국가 출신의 이민 신청자에게는 비자 신청 등록 순위와는 무관하게 영주 자격을 부여하였다.

1986년의 「이민개혁 및 통제법」이 주로 불법 이민자 규제와 사면에 중점을 둔 반면, 1990년의 「이민법」은 합법적인 이민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³⁰⁾ 미국의 이민 수요 가능성을 인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민자의 수를 70만 명으로 확대하면서, 주로 가족 초청 이민(이민자 수의 60% 이상)과 취업 이민을 증가시키고, 1965년 이후 상대적으로 이민수가 적은 국가 출신자에게 이민 혜택을 주는 이민 다변화(diversity) 정책을 폈다.³¹⁾

(4) 1990년 이민법

1990년 이민법에서는 외국인 입국 금지 사유를 건강상의 문제, 범죄, 안보, 공산주의자, 허위 진술로 하고 이 경우 외국인의 이민을 배제한다.³²⁾ 특이사항으로는 동성애 외국인을 건강상의 이유로 입국허가를 하지 않았던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³³⁾ 체류 외국인에 대한 추방은 위장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와 테러행위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외국인의 경우에 시행되었다.³⁴⁾

(5) 1996년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IIRIRA)」과 「반테러 및 실질적 사망 처벌법(AEDPA)」

1996년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IIRIRA)」과 「반테러 및 실질적 사망 처벌법(AEDPA)」은 불법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입법으로,

30) 1990년 이민법은 IMMACT라고도 약칭한다.

31) Weissbrodt, 28-33.

32) ‘입국 배제(exclusion)’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용어가 ‘입국 불허(inadmissibility)’로 변경되었다.

33) Weissbrodt, 36-38.

34) Weissbrodt, 38-39.

국경 순찰 직원을 증가하고, 입국 불허 사유 등을 추가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비시민권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없애거나, 이민 결정에 관한 ‘사법 심사(judicial review)’ 제도를 축소하였다.

(6) 2002년 국토안보법

2002년의 국토안보법에 의해 국토안보부가 신설되고, 이민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었다.³⁵⁾ 테러범의 정의가 확대되어, 테러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테러 기관을 지지하거나, 재정 지원을 한 경우도 테러범과 마찬가지로 미국으로의 입국이 거부되었다.³⁶⁾ 테러 용의자는 비자 발급 이전에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시에 식별하도록 요구되어져, 비자 발급 절차의 지연을 야기했으며, 테러범으로 오인되어 비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초래했다.³⁷⁾ 또한 당시 이민국(INS)은 미국내의 비시민권자를 추적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자를 식별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자, 25개 국가에서 입국한 비이민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주소와 활동사항을 이민국에 등록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학생 및 교환 방문 정보제도(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SEVIS))’를 만들어, 외국인 유학생 또는 방문자가 주소를 변경할 경우, 이민국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주로 아랍이나 회교와 관련이 있는 수천 명의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테러와 연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구금까지 하였다.³⁸⁾

이와 같이 1950년 대 이후 미국 이민법의 주요개정을 살펴보았으며, 기타 개정 사항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국적 취득 등 관련 제도와 함께 이하에서 살펴본다.

35) 116 Stat. 2135.

36) 미국 ‘애국자 법(Patriot Act)’. 115 Stat. 272.

37) Weissbrodt, 47.

38) Weissbrodt, 46-48.

3.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관련 법제

미국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비자(visa) 제도에 의한다.³⁹⁾ 미국의 비자는 ‘이민(자) 비자(immigrant visa)’와 ‘비(非)이민(자) 비자(non-immigrant visa)’로 구분이 된다. 이민 비자는 미국의 영주권(permanent residency)을 취득하기 위해 받는 입국 허가를 말하며, 비이민 비자는 공무수행, 학업, 취업, 방문 등 일시적 또는 단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를 말한다. 그러나, 미국에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이 모두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자 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에 의해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의 경우, 비자 없이 미국을 허가 받은 기간 내에 방문할 수 있다.⁴⁰⁾

또한, 비자만으로 미국 국내로의 입국이 바로 허락되는 것은 아니다. 즉, 미국 비자의 취득이 미국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비자는 미국 입국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공항, 항만, 내륙의 국경지대까지 여행을 허가하며, 미국 내의 입국을 위해 국토안보부의 ‘세관 및 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에 입국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⁴¹⁾ 비자신청과 발급은 미국 국무부에서 담당하는 반면, 미국의 입국허가는 국토안보부에서 담당하며, 비자 이외의 다른 입국허가 서류를 필요로 한다.⁴²⁾ 이에 아래에서 비자 유형과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에 관한 미국의 출입국 관리 제도를 살펴본다.

39) 비자는 입국 사증으로 입국 http://travel.state.gov/visa/visa_1750.html.

40) http://travel.state.gov/visa/temp/without/without_1261.html.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관광 또는 업무상의 목적으로 미국에 90일 미만 동안 미국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자가 필요 없다. http://travel.state.gov/visa/temp/without/without_1990.html.

41) http://travel.state.gov/visa/questions/what/what_4429.html.

42) http://travel.state.gov/law/legal/dhs/dhs_816.html.

(1) 비자의 유형 및 비이민자 비자

비자 유형과 해당 비자에서 파생되는 비자 유형에 따라, 미국 국무부에서 영주권 자격 취득 여부에 따라 이민 또는 비이민(non-immigrant) 비자로 유형을 분류하는데, 미국 비자는 몇 개의 유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이민 또는 비이민자 비자로 분류되어 있다. 아래의 도표는 주로 비이민 비자의 주요 유형을 보여 주는 것이며, 단기 취업 또는 방문, 학업 등에 의한 미국 출입국은 비이민 비자에 의해 가능하다. 이외에도 가족 초청이민, 취업 이민, 투자 이민에 따라 신청하는 별도의 이민 비자 유형이 있다.⁴³⁾

아래 도표에서 빠진 K, U 비자의 경우는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K는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또는 배우자(외국에서 결혼한)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이들에게는 완전한 영주권이 아닌 ‘조건부 영주권 자격’이 주어지므로, 이민 비자 또는 비이민 비자로 혼용되어 분류가 된다고 본다.⁴⁴⁾ U 비자의 경우는 불법체류자인 이민자가 미국 내에 체류하는 동안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비자로, 피해 이민자가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다. U 비자 신청자에게 영주권 자격이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미국 체류 기간에 따라, U 비자 취득 후 영주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비이민 비자로도 분류될 수 있다고 본다.⁴⁵⁾

또 다른 비이민 비자로 S 비자가 있는데, 이는 1994년 「폭력범죄 통제 및 법 집행법(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 of 1994)」에 의해 범법자인 외국인 추적센터를 설립하고, 여권, 비자 관련

43)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_categories.html.

44)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_categories.html.

45) <http://www.jessenlaw.com/US-Immigration-U-Visa.aspx>. (2010. 11. 12. 최종방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데, 이런 범죄자 또는 테러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 등에게 주는 ‘snitch(밀고)’ 비자를 말한다.

비이민 비자의 주요 유형

비자 종류		여행목적	
A	Officials in Foreign Governments	A1	중앙 정부 고위직 또는 미국 주재 공관 파견 외교관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A2	정부 공무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B	(Temporary) Visitor Visa	B1	단기 상용 방문
		B2	단기 관광
C	Transit Visa	C1	미국 경유
		C2	미국내 UN 지역 방문위해 미국 경유
D	Crew Member	D	선원, 승무원과 선원명단
E	Treaty Traders and Treaty Investors	E1	상사주재원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2	투자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E3	호주인 전문직 직원
F	Academic Students	F1	정규교육 혹은 언어연수를 위한 유학
		F2	F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NATO	G1	미국내 소재 국제기구에서 장기 파견 근무할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G2	미국내 소재 국제기구로 단기 파견 출장 가는 정부대표와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
H	Temporary Workers	H1B	전문직 직원 (간호사 제외)
		H1C	간호사

비자 종류		여행목적	
		H2A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직 농업 근로자
		H2B	미국내에서 구인하기 불가능한 임시직 비농업 근로자
I	Journalist, Media, Press	I	언론/보도 활동 언론인, 언론기관 특파원 등
J	Exchange Visitor	J1	문화 교류방문자
		J2	J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L	Intracompany Transferee	L1	동일 회사내 미국 지사 전근자 (국제적 기업에서 경영직, 임원직, 전문분야의 지위에 있는 직원)
		L2	L1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M	Nonacademic Student	M1	직업교육 유학
		M2	M1 소지자의 직계가족
O	Foreign workers with Extraordinary Ability	O1	과학, 예술, 운동, 사업, 교육분야의 특수재능 소유자
		O2	O1 소지자의 동반자, 보조자 (직업적으로)
P	Employment Visa for Athletes and Entertainment Groups	P1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와 공연을 하려는 연예인
		P2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P3	독특한 문화행사 공연자(예술인, 연예인)
Q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Visitor	Q1	국제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
R	Religious Workers	R1	미국내 종교활동 종사자

비자 종류		여행목적	
		R2	R1 소지자의 직계가족
T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1	불법 성매매자, 인신매매 희생자 등

<출처 : 미국 국무부⁴⁶⁾ 및 주한미국대사관⁴⁷⁾>

(2) 이민 비자

이민 비자는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로서, 이민 비자 소유자(immigrant visa holder)는 ‘합법적인 영주권자(Legal Permanent Resident, LPR)’의 자격(status)을 취득하였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green card’가 부여되었다고 말한다. 이 ‘green card’는 ‘외국인 등록카드(Alien Registration Card)’에 대한 속칭으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이 있는 영주권을 소유한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영주권자는 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으로 분류가 된다.⁴⁸⁾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여러 경로가 있다. 가족 관계나 고용을 근거로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 밖에도 이민자의 출신국의 다변화를 고려하여 이민을 받는 경우, 사면(amnesty), 망명, 비이민자 자격에서 이민자로의 자격 조정(adjustment of status) 등의 이유로 외국인에게 이민자의 자격을 주는 경우도 있다.⁴⁹⁾

46) Types of Visas for Temporary Visitors, http://travel.state.gov/visa/temp/types/types_1286.html; http://travel.state.gov/visa/a_zindex/a_zindex_2911.html.

47) http://korean.seoul.usembassy.gov/types_of_visas.html(2010.11.5. 최종방문). 각 비자의 세부적인 내용, 여행목적은 주한미국대사관 자료 내용을 참조하고, 비자 유형 명칭은 미국무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였으며, 세부적인 이민신청서류, 절차 사항 등은 삭제하였다.

48) Scaros, 25.

49) Scaros, 25-51.

1) 가족 관계에 의한 이민자

‘가족 보증에 의한(family-sponsored)’ 이민 또는 가족 초청 이민비자는 가족, 결혼 배우자의 초청, 입양 등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⁵⁰⁾ 직계가족이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를 말한다.⁵¹⁾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의 경우, 이민자의 수를 제한하지 않는 반면, 직계가족 이외의 친척 등 다른 이민자의 경우 모두 이민자 수에 제한을 받는다.⁵²⁾ 직계자녀는 결혼하지 않은 21세 미만(under)의 친자 및 양자를 포함한다.⁵³⁾ 부모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후원할 수 있는 21세 이상이어야 한다.⁵⁴⁾ 비이민자인 배우자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의 ‘유효하고, 지속적인 결혼’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와 관련되어 주요한 사안은 위장결혼과 가정 폭력으로 인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민법상의 이민 자격 관련 문제이다.

① 외국인 배우자의 이민 비자와 위장결혼

특히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위장결혼(sham marriage)을 예방하기 위해 「1986년 이민결혼사기개정법(The Immigration Marriage Fraud Amendments of 1986)」이 만들어졌다. 이 법에 의해, 외국인 배우자는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영주권자(LPR) 자격이 ‘조건부’로 부여되고,⁵⁵⁾ 2년이 지난 후에 국토안보부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외국인 배우자간의 결혼의 진정성을 재검토한다. 만약 외국인 배

50) INA Sec. 201(b).

51) INA Sec. 201(b)(2)(A)(i).

52) INA Sec. 201(b). [8 U.S.C. 1151(b)].

53) INA Sec. 101(b)(1) [18 U.S.C. 1101(b)(1)].

54) Scaros, 28.

55) 조건부 영주권자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 또는 ‘conditional two-year LPR status’).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extoid=4ca43a4107083210VgnVCM100000082ca60aRCRD&vgnnextchannel=4ca43a4107083210VgnVCM100000082ca60aRCRD> (2010. 11. 9. 최종방문).

우자가 영주권 자격 취득 후, 2년간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외국인 배우자의 ‘조건부 영주권’ 자격이 박탈되고, 외국인 배우자는 출국조치를 당할 수 있다.⁵⁶⁾ 이 조건은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부부에게 적용이 된다.⁵⁷⁾

위와 같은 이민 위장결혼은 결혼의 진정성이 없이 오직 시민권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결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만약 진정으로 결혼 의사를 가지고 적법하게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2년의 조건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혼을 하는 경우에 외국인 배우자의 영주권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킬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혼 또는 배우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토안전부에 ‘조건부 영주권자’에 부가된 ‘조건’을 제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⁵⁸⁾

② 가정 폭력과 외국인 배우자 보호

가정에서 학대받는 피해 여성인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민권 취득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결혼을 지속하면서, 상대 배우자의 폭력이나 학대에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피해자인 외국인 배우자는 도움을 요청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고, 언어 문제로 인해, 미국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가정 폭력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하기도 두려워하며, 이러한 두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게 된다.⁵⁹⁾ 이런

56) <http://www.uscis.gov/> (Resources -> glossary 참조).

57) USCIS, ‘Remove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ce Based on Marriage,’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745218a1f8b73210VgnVCM100000082ca60aRCRD&vgnnextchannel=4ca43a4107083210VgnVCM100000082ca60aRCRD> (2010. 11. 9. 최종방문).

58) 앞의 주석

59) USCIS, ‘Information on the Legal Rights Available to Immigran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Facts about Immigrating on a Marriage-Based Visa.’

가정 폭력 피해당사자인 외국인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학대, 폭력으로 인해 영주권 자격 부여 이후 2년 동안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extreme hardship(극도의 곤경 상태)’를 증명한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영주권자 자격을 유지해 주기도 한다.⁶⁰⁾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최근 입법례로서, 2005년 「국제결혼중개인규제법(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of 2005 (IMBRA)」⁶¹⁾은 가정 폭력에 의한 피해 여성인 외국인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국토안보부로 하여금 국무부, 법무부, 기타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와 협조하여, 미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 약혼자나 배우자를 위한 안내책자(pamphlet)를 개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안내책자에는 K-visa⁶²⁾ 발급절차, 가정폭력 및 기타 범죄의 피해자인 이주민을 위한 법적 권리나 정보, 결혼사기의 불법성, 자녀 후원에 관한 미국의 법적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도록 했다.⁶³⁾ 또한, 동 법은 미국으로 초청되는 외국인 약혼자나 배우자에게 미국 시민권자인 약혼자 또는 배우자의 범죄 또는 가정폭력에 대한 이력 등의 정보를 미국정부가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⁶⁴⁾ 이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는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14176543f6d1a/?vgnnextoid=2fb27cdb97eeb210VgnVCM10000082ca60aRCRD&vgnnextchannel=4df19ddf801b3210VgnVCM100000b92ca60aRCRD> (2010. 11. 9. 최종방문).

60) 이를 ‘곤경에 의한 면제(hardship waiver)’라고 하여, 2년 동안의 결혼유지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Scaros, 28; USCIS, ‘Remove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ce Based on Marriage.’

61) 이는 재인가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2005)’의 부분으로 편입되었으며, 2006년 1월 5일 서명되었다. <http://www.tahirih.org/site/wp-content/uploads/2009/03/imbrasummary.pdf>.

62) K-visa는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약혼자의 동반자녀, 배우자 등을 초청하는 비자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이민 바자의 종류’에서 이를 소개하고 있으면서, ‘비이민 비자의 유형으로도 분류하고 있다.

http://korean.seoul.usembassy.gov/visa_categories.html.

63) IMBRA, Secs. 833(a) and (b). Informational Pamphlet about Legal Rights and Resources.

64) USCIS, ‘Information on the Legal Rights Available to Immigrant Victims of Domestic

외국인 약혼자, 배우자를 초청하는 K-비자를 받기 위한 ‘이민 초청장 (petition, ‘청원서’라고도 함)’에 자신의 가정 폭력, 폭행 등의 범죄력, 아동 및 연장자 학대 또는 유기, 스토킹(stalking), 음주관련 범법 또는 위반 행위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⁶⁵⁾

③ 범죄행위로부터 피해 이민자 보호

외국인 배우자가 아닌 경우라도, 미국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를 위해 미국 체류 등을 허가해 주는 이민 제도가 있다. 국제적인 인신매매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2003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재인가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of 2003)」은 인신매매에 의한 피해자인 가족구성원에게 주어진다. T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비자 신청당시 21세 미만인 경우,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아동, 18세 미만의 미혼자녀와 부모에게 T-2, T-3, T-4, T-5 등 T-파생 비자(derivative visa)를 부여한다. 2003년 법에 의해 이러한 인신매매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은 난민에게 수여되는 연방기금이나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⁶⁶⁾

2) 고용 관계에 의한 이민자

고용 관련 이민 제도는 미국의 경제 산업의 발전에 요구되는 인재와 기술 인력 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민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는 미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력의 필요에 따라, 1998년 「미국 경쟁력 및 인력개선법(American Competitiveness and Workforce Improvement Act of 1998)」⁶⁷⁾과 「21세기 미국 경쟁력법(American

Viol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Facts about Immigrating on a Marriage-Based Visa.’

65) IMBRA, Secs. 832(a), 833(a)(5)(A)(ii)-(iii), 833(b)-(c).

<http://www.tahirih.org/site/wp-content/uploads/2009/03/imbrasummary.pdf>.

66) <http://www.acf.hhs.gov/programs/orr/policy/sl04-12.htm>.

67) 112 Stat. 2681.

Competitiven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ct)』⁶⁸⁾가 제정되어 외국인 전문 인력에게 수여하는 H-1B 비자를 일시적으로 증가시켰다. 『21세기 미국 경쟁력법』의 경우에는, 외국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를 향후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해,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주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였다.⁶⁹⁾

현재 고용에 의한(employment-based) 이민 비자는 매년 약 140,000명의 외국인에게 부여되는데,⁷⁰⁾ 이민 비자 대상으로는 우선권이 있는 근로자, 고학력 학위취득의 전문가나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일반 기술자나 전문가, 기타 특별한 이민자, 투자 이민자로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⁷¹⁾ 우선권이 있는 근로자는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로 과학, 예술, 교육, 경영 또는 체능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거나 업적을 인정받은 경우로 미국 이민 후, 미국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외국인을 말하며, 교수 또는 연구원 등 해당 학문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었을 경우나, 다국적 기업의 임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⁷²⁾

일반 취업 이민의 경우, 미국 내에 자격과 능력이 있는 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고, 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국인 고용주가 증명한 후,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로부터 허가를 받는다면, 미국인 고용주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고도의 기술과 특별한 능력을 소유한 전문가, 특수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의 통역사, 미국 정부에 조력한 이라크인, 파나마 운하 근로자, 방송인, 국제기구 근로

68) 114 Stat. 1251.

69) Weissbrodt, 44-45.

70) http://travel.state.gov/visa/immigrants/types/types_1323.html.

71) INA Sec. 203(b). [8 U.S.C. 1153(b)]. Preference Allocation for Employment-Based Immigrants.

72) INA Sec. 203(b)(1) Priority workers, (A) Aliens with extraordinary ability.

자, 종교인, 의사 등에게 적용이 된다. 특히 의사의 경우 ‘국익 면제 (National Interest Waiver)’제도에 의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정된 지역이나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5년간 봉사해야 한다.⁷³⁾

3) 난민과 망명에 의한 이민자

인권침해의 피해자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난민이나 망명자의 경우, 과거에 박해를 받은 사실이나 본국으로 송환시 박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난민 또는 망명자의 지위로 이민이 가능하다.⁷⁴⁾ 대통령은 의회와 합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입국을 허가할 난민 이민자의 최대 인원수를 설정해 놓는다. 또한 난민 등은 이민 정책상 ‘일시보호자격(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에 해당할 경우, 미국내에 체류가 가능하다. ‘일시보호자격’이란 외국의 국내정세가 불안할 경우, 그 국민을 외국으로 돌려보낼 경우, 그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일시적으로 그 국민을 미국에서 보호하는 제도이다. 국토안전부 장관은 국내정세가 불안한 국가를 지정하여, 보호대상 국민을 정할 수 있다.⁷⁵⁾

73) INA Sec. 203(b)(2)(B)(ii)(I).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e39718a1f8b73210VgnVCM100000082ca60aRCRD&vgnnextchannel=a695a6c515083210VgnVCM100000082ca60aRCRD> (2010. 11. 14. 최종방문).

74) INA Sec. 207. Annual admission of refugees and admission of emergency situation refugees. 난민 여부는 Sec. 101(a)(42)에 의해 결정된다. “any person who is outside any country of such person’s nationality or, ... and who is unable or unwilling to return to, and is unable or unwilling to avail himself or her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because of persecution or a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on account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in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

75) USCIS, Temporary Protected Status.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extoid=848f7f2ef0745210VgnVCM100000082ca60aRCRD&vgnnextchannel=848f7f2ef0745210VgnVCM100000082ca60aRCRD> (2010.11.14. 최종방문).

(3)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제재

1) 입국 불허

외국인이 비자를 소지했다고 해서, 미국에 꼭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입국 장소에서 입국 심사 시 국토안보부 직원에 의해 입국 거부를 받는 경우, 즉 ‘입국 불허(inadmissibility)’로 판정이 되는 경우, 미국으로 들어 갈 수가 없다. 이에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사유를 이민법에서 명시해 놓고 있다.⁷⁶⁾ 그 사유로는 건강, 범죄자, 안보 위협, ‘생활보호대상자(public charge)’로 지정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부적격한 근로자, 불법 입국 및 이민 위반자, 서류상의 하자, 시민권 비적격자, 전에 미국에서 추방(removal)된 적이 있는 외국인 등이 있다.

특이 사항으로는 건강상의 입국 불허는 미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전염병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 건강상의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는데, 다만 전염성이 있는 병에 감염되었더라도, 적절한 예방접종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입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개정된 사항은 HIV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입국 불허는 2010년 1월 4일부터 해제되었다.⁷⁷⁾ 이는 2008년 의회에서 이민법 제212(a)(1)(A)(i)를 개정하여, ‘건강인류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가 ‘HIV 바이러스 감염’을 공중보건상 전염성이 있는 병으로 지정하는 것을 중지시키고, 2009년 7월 전염병 목록에서 삭제됨에 따라, HIV바이러스에 감염된 외국인도 2010년부터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⁷⁸⁾

76) INA Sec. 212(a). [8 U.S.C. 1182(a)], General classes of aliens ineligible to receive visas and ineligible for admission; waivers of inadmissibility.

77) INA Sec. 212(a)(1)(A)(i)에서 ‘HIV 바이러스 감염자’ 입국 거부 내용이 삭제됨.
<http://www.uscis.gov/USCIS/New%20Structure/Laws%20and%20Regulations/Memoranda/2009/HIVInadmissibilityFinalHHSRule.pdf>.

78) USCIS, Memorandum on Public Law 110-293, 42 CFR 34.2(b), and Inadmissibility Due to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Infection (2009. 11. 24).

2) 국외로의 추방

198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의 미국 내의 외국인 거주현황을 조사한 한 국토안전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의 허가받지 않고 입국한 외국인 2000-2004년 기간 동안 약 3백만 명, 2005-2009년 기간에는 약 백만 명 가량으로, 1980년 이후 2009년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허가받지 않은 이민자는 총 10,750,000 명으로 조사되었다.⁷⁹⁾ 같은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한 외국 출생의 이민자는 총 3,100만명으로, 불법 입국 외국인은 약 3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i) 불법 이민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민자 규제 제도 중 하나가 외국인에 대한 ‘추방 또는 축출(removal)’인데, 이는 미국 입국 전이나 후에 미국 이민 법정의 명령으로 외국인을 미국으로부터 추방을 하는 것을 말한다.⁸⁰⁾ 외국인으로서 입국 시 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입국한 경우나 외국인 자격을 조정해야 함에도 적시에 자격 변경하지 않은 경우와 기타 이민법을 위반하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⁸¹⁾ 또한 ‘입국 불허’처분을 받아야 할 외국인이 입국 심사를 통과한 경우라도, 입국 후에 입국 불허 사실이 발각이 되면 추방의 대상이 된다.⁸²⁾

79) Michael Hoefer and others, *Estimates of the Unauthorized Immigrant Population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January 2009* (2010), http://www.dhs.gov/xlibrary/assets/statistics/publications/ois_ill_pe_2009.pdf.

80) Sec. 237 [8 U.S.C. 1227]. 1996년 이민법 개정전에는 ‘deportation(추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removal’은 ‘제거’, ;해고‘로 통상적으로 번역되나, 여기에서는 불법 이민자를 찾아내어, 국외로 추방하는 의미를 포함한다는 뜻에서 ‘축출’, ‘추방’ 등으로 혼용하여 번역한다.

81) Sec. 237(a)(1). Inadmissible at time of entry or of adjustment of status or violates status. 결혼사기, 밀입국 등도 포함된다.

82) Scaros, 67.

ii)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도 추방될 수 있는데, 범죄행위에는 부도덕한 범죄, 마약, 무기 소지, 가정 폭력, 인신매매 등의 범죄도 포함이 되고,⁸³⁾ 테러 활동이나 공공의 안전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활동을 하는 자도 추방이 되는데, 입국 불허 사유와 동일하다. 기타 이민 법상 외국인에게 요구되는 지문 날인이나 주소 기록 등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⁸⁴⁾ 생활보호대상자로 5년간 지속하거나, 불법적으로 투표에 참가한 경우에도 추방이 될 수 있다.

iii) 추방 대상인 외국인에게는 ‘추방 공판 또는 심리(removal hearing)’의 기회가 부여되고, 이민관사가 입국 불허 여부(inadmissibility) 또는 추방 여부(deportability)를 결정한다.⁸⁵⁾ 가중 처벌을 받은 중죄인인 경우에는 추방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감금이나 구류 상태에서 추방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⁸⁶⁾

iv) 재량에 의한 추방 결정을 받은 외국인은 미국 법무부의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에 항소할 수 있고, 나아가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다.⁸⁷⁾ 추방 결정에 대한 구제수단(relief)으로 이민관사의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판사 ‘재량에 의한 구제(discretionary relief)’에는 ‘추방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⁸⁸⁾ ‘자발적 출발(voluntary departure)’,⁸⁹⁾ ‘추방 보류(withholding of removal)’와 ‘추방 정지(stay of removal)’가 있다.⁹⁰⁾

83) INA Sec. 237(a)(3).

84) INA Sec. 237(a)(3). Failure to register and falsification of documents.

85) INA Sec. 240. Removal proceedings.

86) INA Sec. 238 [8 U.S.C. 1228]; Expedited removal of aliens convicted of committing aggravated felonies.

87) INA Sec. 242. Judicial review of orders of removal.

88) INA Sec. 240A. Cancellation of removal; adjustment of status.

89) INA Sec. 240B. Voluntary departure.

90) Scaros, 68-70.

4. 외국인의 국적 취득 관련 법제

미국의 국적(또는 시민권)⁹¹⁾ 취득, 즉 ‘귀화(naturalization)’는 외국 시민 또는 국민에게 미국시민권을 부여하는 절차로, 미국 이민법 규정에 따른 귀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영주권자만이 귀화를 신청할 수 있고, 미국 군인 및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미국 내에서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⁹²⁾ 귀화는 일반 귀화 이외에 외국인 배우자, 미국 군인과 그 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등에 적용되는 귀화가 있으며, 각각의 귀화 요건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 귀화의 경우, 기본적으로 적어도 5년 동안 영주권자이어야 하며,⁹³⁾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3년 이상 영주권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⁹⁴⁾

(1) 귀화 요건

1) 일반 귀화 요건

일반 귀화의 경우,⁹⁵⁾ 귀화 신청자는 18세 이상의 자로, 5년 동안 영주권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⁹⁶⁾ 미국 내

91) 미국에서의 국적 취득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함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국적(nationality)과 시민권(citizenship)이 혼용되어 번역이 되었다. 그러나, 시민권자(citizen)와 국민(national)은 항상 같은 개념이 아니다. 앞의 주석 29번 참조.

92) USCIS, Citizenship Through Naturalization,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nextchannel=d84d6811264a3210VgnVCM100000b92ca60aRCRD&vgnextoid=d84d6811264a3210VgnVCM100000b92ca60aRCRD> (2010. 11. 10. 최종방문).

93) 미국 귀화상의 요건인 ‘영주권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과, 한국 국적법 상 귀화요건의 ‘국내체류 기간’이라는 용어가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USCIS, General Path to Naturalization.

94) USCIS, Naturalization for Spouses of U.S. Citizens,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extoid=a0ffa3ac86aa3210VgnVCM100000b92ca60aRCRD&vgnnextchannel=a0ffa3ac86aa3210VgnVCM100000b92ca60aRCRD> (2010. 11. 10. 최종방문).

95) INA, Sec. 316(a). [8 U.S.C. 1427(a)]. Requirements as to residence, good moral character, attachment to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nd favorable disposition to the United States.

거주 요건으로는,⁹⁷⁾ 영주권 취득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거주(continuous reside)하여야 하며, 귀화신청 전 총 국내거주기간(5년)의 절반 이상(30개월)은 ‘실제로 미국 내에 거주(physically present)’해야 하고, 귀화를 신청하는 주(state)나 지역(district)에서 적어도 3개월은 거주를 해야 한다.⁹⁸⁾ 또한, 귀화 신청 이후에는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 거주해야 한다.⁹⁹⁾ 개인 성품 관련 요건으로, 귀화 신청자는 위 영주권 취득 요건에 해당하는 거주 기간 동안 ‘선량한 도덕적인 품성’(good moral character)을 소유한 자로서, 미국 헌법 원칙의 의미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의 선량한 질서와 생활에 만족하는 호의적인 태도를 지닌 자이어야 한다.¹⁰⁰⁾ 기타 영어 능력과 미국 역사, 정부에 대한 이해(civic test)를 요구한다. 영어 능력 시험은 나이와 영주권자(자격 유지) 기간에 따라 면제되기도 한다.¹⁰¹⁾

96) USCIS, General Path to Naturalization,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nextoid=86bd6811264a3210VgnVCM100000b92ca60aRCRD&vgnnextchannel=86bd6811264a3210VgnVCM100000b92ca60aRCRD> (2010. 11. 10. 최종방문).

97) 미국에서의 거주 요건은 ‘continuous residence(지속적인 거주)’와 ‘physical presence(직역상으로는 ‘신체적 현존’으로 번역할 수도 있으나, 의역하여 ‘실제로 미국 내에 거주’로 번역함)’가 있다. 우리 국적법상 ‘국내체류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본고에서는 ‘지속적인 거주’와 ‘실제 거주’라는 용어로 구분하여 번역한다.

98) INA, Sec. 316(a)(1).

99) INA, Sec. 316(a)(2).

100) INA, Sec. 316(a)(3). “(3) during all the periods referred to in this subsection has been and still is a person of good moral character, attached to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well disposed to the good order and happiness of the United States.” 마지막 부분인 “... well disposed to the good order and happiness of the United States”는 필자 나름대로 의역하였으며, ‘선량한 도덕적인 품성’(good moral character)’에 대한 해석이나 정의는 이와 다를 수도 있다.

101) 50세 이상으로 20년간 영주권자이거나, 55세 이상으로 15년간 영주권자인 경우, 영어시험은 면제 받는다. 그러나, 미국 역사, 정부에 관한 시험은 봐야 한다. USCIS, Exceptions & Accommodations,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nextoid=ffe2a3ac86aa3210VgnVCM100000b92ca60aRCRD&vgnnextchannel=ffe2a3ac86aa3210VgnVCM100000b92ca60aRCRD> (2010. 11. 10. 최종방문).

2) 외국인 배우자 귀화 요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적어도 3년 동안 영주권자이면서, 동일한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적어도 3년 동안 결혼을 유지한다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¹⁰²⁾ 결혼 상태는 귀화 심사 시까지도 유지되어야 한다.¹⁰³⁾ 3년의 거주 기간과 미국 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기간이 3년의 반(18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 이외에 다른 귀화요건은 일반 귀화 요건과 같다.

그러나, 외국에 근무하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의 국적 취득 신청의 경우, 예외적으로 위 일반 외국인 배우자와는 달리 영주권 자격 유지기간이나 국내거주기간 충족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¹⁰⁴⁾ 미국 정부, 군대, 기타 자격 있는 고용기관에 의해 고용된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적어도 1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즉, 해당 배우자는 일반 배우자와 같이 3년 동안 영주권 자격을 유지하거나, 3년 동안 미국 내에 거주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귀화신청 심사와 귀화 당시, 실제로 미국에 있어야 하며, 기타 거주기간 이외의 귀화요건은 일반 배우자의 경우와 같다.¹⁰⁵⁾

3)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에 관한 귀화 요건

출생 당시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의 친자 또는 양자는 외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더라도, 부모의 시민권 또는 귀화에 근거(또는 수반)하여,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¹⁰⁶⁾ 이 경우의 귀화 요건은 자녀가 미국 내에 거

102) INA, Sec. 319(a) [8 U.S.C. 1430(a)].

103) INA, Sec. 319(a); USCIS, Spouses of U.S. Citizens Employed Abroad,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nextoid=a0ffa3ac86aa3210VgnVCM100000b92ca60aRCRD&vgnnextchannel=a0ffa3ac86aa3210VgnVCM100000b92ca60aRCRD> (2010. 11. 10. 최종방문).

104) INA, Sec. 319(b).

105) USCIS, Spouses of U.S. Citizens Employed Abroad.

106) USCIS, Citizenship Through Parents,

주하는 경우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두 사례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⁰⁷⁾

① 미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먼저 외국에서 출생했으나, 미국 내에 영주(residing permanently)하는 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이고, 미혼이면,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된다. 부 또는 모 중 1인이 미국 시민권자(출생 또는 귀화에 의한 시민권 취득)이면 족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가 자녀에 대해 법적, 신체적 양육권이 있어야 한다.¹⁰⁸⁾ 혼인 외의 출생자의 경우, 16세가 될 때까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준정이 되어야 하고, 법률상 부모가 법적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¹⁰⁹⁾ 양자인 경우에도 이민법 규정에 따라 별도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¹¹⁰⁾ 18세 이상의 자녀는 「자녀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개정에 의해, 2001년 2월 27일부터 이민법 제320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¹¹¹⁾

②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편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친자 또는 양자의 경우, 이민법 제322조의 요건에 따라 귀화 자격이 주어진다.¹¹²⁾ 부 또는 모 중 1인이 미국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nextoid=32dffe9dd4aa3210VgnVCM100000b92ca60aRCRD&vgnnextchannel=32dffe9dd4aa3210VgnVCM100000b92ca60aRCRD> (2010. 11. 10. 최종방문).

107) USCIS, Biological or Adopted Children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 Biological or Adopted Children Resid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자녀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개정이 반영되었다.

108) INA, Sec. 320. [8 U.S.C. 1431]. Children born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residing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conditions under which citizenship automatically acquired.

109) INA, Sec. 101(c)(1).

110) INA, Sec. 101(b)(1)(E), (F) or (G).

111) INA, Sec. 322. USCIS, Biological or Adopted Children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nextoid=d4c3a3ac86aa3210VgnVCM100000b92ca60aRCRD&vgnnextchannel=d4c3a3ac86aa3210VgnVCM100000b92ca60aRCRD> (2010. 11. 10. 최종방문).

112) Sec. 322. [8 U.S.C. 1433]. Children born and resid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conditions

시민권자이거나, 만약 부모가 사망했다면, 사망 당시 부 또는 모가 미국 시민권자이면 된다. 미국 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 조모 또는 조부(친가 및 양가)가 14세 이후에, 미국이나 미국 자치령에 적어도 5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만 한다.¹¹³⁾ 자녀가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의 법적, 신체적 양육권 하에 있어야 하고, 만약 부모가 사망했다면, 어느 누구도 위 자녀의 미국 귀화 신청에 반대를 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에 적법하게 입국한 이후에는 일시적으로 미국 내에 있어야 하고, 미국 내에 적법한 체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4) 기타 귀화 요건

예외적으로 미국 정부, 국제기구, 미국 연구기관,¹¹⁴⁾ 국제면제법(International Immunities Act)에 의해 지정된 기관 등에 고용되어 외국에 체류 중인 귀화 신청자의 경우, 이민법 제316조에 의해 미국 내의 ‘지속적인 거주’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도,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¹¹⁵⁾

(2) 국적 상실

미국에서는 국적(시민권) 상실¹¹⁶⁾을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한다. 하나는 ‘국적(시민권) 취소 또는 박탈(denaturalization)’로 시민권을 위법하게

for acquiring certificate of citizenship.

113) USCIS, Biological or Adopted Children Resid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extoid=8554a3ac86aa3210VgnVCM100000b92ca60aRCRD&vgnnextchannel=8554a3ac86aa3210VgnVCM100000b92ca60aRCRD> (2010. 11. 10. 최종방문).

114) USCIS, Requesting Recognition as an American Institution of Research,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9e3ee16bc96a4210VgnVCM100000082ca60aRCRD&vgnnextchannel=399faf4c0adb4210VgnVCM100000082ca60aRCRD> (2010. 11. 10. 최종방문).

115) INA, Sec. 316(b), (c) & (f).

116) 미국 이민법에서 시민권(citizenship)을 국적(nationality)의 개념과 혼용하여 번역하였다. 앞의 주석 84번 참조.

또는 사기적인 방법으로 획득했을 경우, 시민권 취득을 취소하는 것이다.¹¹⁷⁾ 다른 하나는 ‘국적(시민권) 이탈(expatriation)’로 귀화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던 자 또는 본래 시민권자에게 모든 시민권자에게 적용되는데, 원래 취득한 시민권의 하자를 추정하지 않고, 시민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시민권을 포기한 경우에 적용된다.¹¹⁸⁾

i) 국적 취득의 취소는 사법이나 행정절차에 의해, 국적을 무효로 할 수 있다.¹¹⁹⁾ 국적 취득의 사유는 귀화 증명서(certification of naturalization)를 ‘중대한 사실을 은닉하거나 고의적인 허위 진술(concealment of material fact or wilful misrepresentation)’로 취득한 경우나 불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경우이다.¹²⁰⁾ 국적 이탈은 시민권자가 자발적으로 미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국가의 시민권자가 되기를 원한 경우에 적용된다. 주요한 국적 이탈 방법으로는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¹²¹⁾ 다른 국가에 충성을 맹세한 경우,¹²²⁾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하는 외국의 군대에 입대한 경우,¹²³⁾ 외국 정부에 고용된 경우,¹²⁴⁾ 국가에 반역, 전복을 꾀한 경우¹²⁵⁾ 등이다.

ii) 국적이탈 관련 특이한 제도로 미국정부의 과세를 피하기 위해, 부자들이 국적 이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1996년 두 개의 법을 제정되었다. 1996년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은 과세를 피하기 위해 시민권을 포기하는 자에게 국적 이탈 후 10년간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법이다.¹²⁶⁾ 또한

117) INA Sec. 340(a).

118) INA Sec. 349.

119) INA Secs. 340(a), 340(h).

120) INA Sec. 340(a).

121) INA Sec. 349(a)(1).

122) INA Sec. 349(a)(2).

123) INA Sec. 349(a)(3).

124) INA Sec. 349(a)(4).

125) INA Sec. 349(a)(7).

126) 110 Stat. 2093. <http://www.gpo.gov/congress/joint/jcs-2-03/a211.pdf>;

「불법 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에 의해 시민권자이었던 자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시민권을 포기한 경우,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¹²⁷⁾

5. 소 결

미국 이민의 기본 정책은 이민자 인원수의 제한이나 확대, 질적 이민자에 대한 이민 우선순위 부여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중요성에 근거해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무제한 또는 우선제도를 두고 있기도 하고, 세계 시민 주의적인, 인권보호적인 차원에서 난민 수용 정책을 쓰고, 범죄 피해자 등을 구제하는 정책도 이민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민 제도는 ‘국익’에 의해 수시로 개정되고, 이용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 인력의 필요성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이 이민 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제 3 절 프랑스¹²⁸⁾

1. 개 설

프랑스는 미국 다음으로 이민자의 수가 많은 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세기 들어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의 마그렙(Maghreb) 주민들이 대거 프랑스로 이주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이러한 이주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마그렙 이주민만 해도

<http://www.allbusiness.com/legal/estate-gift-trust-law-estate-tax/12402022-1.html> (2010. 11. 15. 최종방문).

127) INA Sec. 212(a)(10)(E).

128) 김현희, “프랑스의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각국의 법제 현황과 과제』(한국법제연구원 위크샵 2010.11.23), 주제발표문을 발췌 및 정리한 것이다

프랑스 전체 6천만의 인구 중 10%에 해당하는 600만 명에 이르며, 이러한 수치는 유럽 국가 중 단연 최대의 규모라 할 수 있다.¹²⁹⁾ 이는 미국이 혈통을 중시하는 것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으로,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혈통 뿐 아니라 “문화”까지도 고려하는 허용주의를 원칙적으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¹³⁰⁾

그리하여 프랑스는 “이주의 땅”이라 불릴 정도로 외국인의 이주 내지 이민에 관대한 국가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이는 박해나 전쟁을 피하려는 정치적 이동과, 식민 통치 후 과거 역사의 청산, 경제 위기 및 극도의 빈곤을 벗어나려는 이민의 특성들이 서로 얽힌 모습으로 나타난다. 다만 프랑스의 이주민에 대한 정책은 피부색과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차별하지 않는 대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여 특별하게 도와주지도 않는, 이른바 “이민자를 받아들이되 끌어안지도 않는” ‘느슨한 통합주의’로 일관하여 왔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현재 프랑스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정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민 및 국적 취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불법적인 출입국을 엄격히 하고 통합의 가능성이 높은 이주민을 우선적으로 수

129) 프랑스 내 이주민은 현재 독일(306만 명), 영국(148만 명), 네델란드(87만 명), 스웨덴(28만 명)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럽국가들 중 최대의 이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이다. 프랑스 전체 인구의 1/3인 1800만 명 이상은 적어도 한 명의 외국인을 조부모로 하며, 3대 이상의 프랑스인 비율은 25%정도 밖에 안 된다. 양미애, “프랑스 이주민 갈등과 통합 -마그레브(Maghreb) 이주민을 중심으로-”, 『프랑스학연구』 제45집 (2008. 8. 15), 267- 268면.

130) 프랑스에서 “국적”은 외국 혈통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부모나 조부모 중 한사람이 프랑스에 이주해 와 프랑스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개념까지 포함한다. 이것은 타국에서 이주해 온 사람과 외국에서 태어나 프랑스에 사는 사람인 외국인이란 용어와 잘못 동일시되기도 한다. 프랑스에서 국적 취득의 가장 단순한 조건은 친자관계이며, 최소한 부모 중의 한 사람이 프랑스인인 모든 적자, 서자, 사생아는 분명 프랑스인이다. 즉 다른 국적이 혼합된 것으로 지칭되는 부부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몇몇 조건상 프랑스 국적을 포기할 가능성은 있지만 엄연히 프랑스인인 것이다. 또한 법률상 최소한 부모 중의 한 사람이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프랑스에서 태어났다면 그 또한 프랑스인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프랑스 내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다. 양미애, 위의 논문, 278-27쪽.

용하는 정책과 함께, 이미 프랑스 사회에 정착한 이주민에 대하여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회통합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프랑스의 출입국과 체류 및 국적취득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그 현황과 함께 관계법령의 내용을 살펴본다.

2.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관련 법제 현황

(1)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망명권에 관한 법률

프랑스는 대표적인 통합 법전의 체계를 취하는 국가로서, 소위 외국인법(code des étrangers)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전”(CESEDA)이라는 프랑스법은 외국인의 권리에 관한 법령적 규정을 재구성한 법전에 해당한다.

법전 자체는 2004년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도미니끄 빌르뵙과 국무총리 장-삐에라 라파랭의 제안으로 1945년 11월 2일자 오르도낭스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2005년 3월 1일자로 시행되었고, 시행령 부분은 2006년 11월 15일에 이르러서야 공포된 비교적 역사가 짧은 편에 속하지만, 기존의 단일법령은 필요한 상황에 따라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망명권에 관한 법전(편제 목차)

제 1 편 외국인 및 일정 국가의 거주민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규정
제 1 장 일반 규정
제 2 장 EU 회원국 또는 유로 화폐 사용국의 거주민 및 스위스 거주민과 그들의 가족의 입국 및 체류
제 3 장 기타 국가의 거주민의 입국 및 체류 - 법률 규정 없음

제 2 편 프랑스 입국

제 1 장 입국허가 조건

제 1 절 필요서류

제 2 절 비용

제 3 절 입국거부

제 2 장 대기구역(zone d'attente)에의 거주

제 1 절 대기구역에의 거주 조건

제 2 절 대기구역에의 거주 연장

제 3 절 대기구역 거주 외국인의 권리의 제한

제 4 절 대기구역으로부터의 출소

제 3 편 프랑스 체류

제 1 장 체류자격

제 1 절 일반규정

제 2 절 체류자격 심사위원회

제 3 절 임시체류증¹³¹⁾

제 4 절 외국인등록증

제 5 절 “능력 및 재능”이 기재된 체류증

제 6 절 일부 법률위반으로 등록되었거나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거주민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제 7 절 “퇴직”이 기재된 체류증

제 2 장 체류조건

제 1 절 왕래조건

제 2 절 직업 활동에의 종사

제 3 장 자원복귀에 대한 지원

131) 임시체류증의 유형으로서 이 법전이 정하고 있는 것은 “방문”기재 체류증, “학

<p>제 4 편 가족의 통합(regroupement)</p> <p>제 1 장 가족 통합의 기준</p> <p>제 2 장 신청서의 심사</p> <p>제 3 장 체류자격의 부여</p> <p>제 4 장 일반규정</p>
<p>제 5 편 격리조치</p> <p>제 1 장 프랑스 영토로부터의 출국의무 및 국경으로의 이송</p> <p>제 1 절 프랑스 영토로부터의 출국 또는 국경으로의 이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p> <p>제 2 절 행정적 및 사법적 절차</p> <p>제 3 절 프랑스 영토로부터의 출국의무 및 국경으로의 이송조치의 집행</p> <p>제 4 절 기안 및 구아드룸에 적용되는 규정</p>
<p>제 6 편 통제 및 벌칙</p> <p>제 1 장 통제</p> <p>제 2 장 벌칙</p> <p>제 1 절 불법입국 및 불법체류</p> <p>제 2 절 불법입국 및 불법체류에 대한 지원</p> <p>제 3 절 프랑스 체류자격 및 국적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할 목적만을 가진 인지 또는 혼인</p> <p>제 4 절 거주지로부터의 격리 및 지정조치에 대한 무지</p> <p>제 5 절 교통회사에 포함된 의무에 대한 무지</p> <p>제 6 절 기타 규정</p>

<p>제 7 편 망명권</p> <p>제 1 장 일반규정</p> <p>제 1 절 망명자격</p> <p>제 2 절 보조적 보호</p> <p>제 3 절 공통 규정</p> <p>제 2 장 프랑스 망명자 및 무국적자 보호청</p> <p>제 1 절 임무</p> <p>제 2 절 조직</p> <p>제 3 절 망명신청의 심사</p> <p>제 3 장 국가 망명권 법원</p> <p>제 1 절 임무</p> <p>제 2 절 조직</p> <p>제 3 절 소송의 심리</p> <p>제 4 장 망명신청자의 체류권</p> <p>제 1 절 체류허가</p> <p>제 2 절 프랑스 체류 기간</p> <p>제 5 장 기타 규정</p>
<p>제 8 편 공통 규정 및 기타 규정</p> <p>제 1 장 임시보호</p> <p>제 2 장 억류소 또는 대기구역에 억류된 인물의 이동에 관한 규정</p> <p>제 3 장 생-삐에르-미끄롱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p>
<p>제 9 편 공동개발</p>

생”기재 체류증, “학문”기재 체류증, “예술 및 문화관련 직업”기재 체류증, “직업활동”기재 체류증, “사생활 및 가족”기재 체류증 등이 있다.

(2)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

1) 출입국 - 비자

프랑스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이주민이 매우 많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정식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정당한 방법으로 프랑스에 입국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수 또는 비율이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유입 중의 나머지는 결국 불법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3-2009년 비자신청 추이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8 ~2009 변화율
신청수	2508052	2514429	2411370	2344617	2350760	2336779	2100268	-10.1%
거부 비율	+19.3%	+15.6%	+12.8%	+10.7%	10.4%	+9.6%	+10.8%	+12.5%
비자 거부 수	483873	391410	307575	250476	240233	224991	224053	-0.4%
총 교부 비자 수	2024179	2059460	2051334	2038888	2070705	2069531	1842856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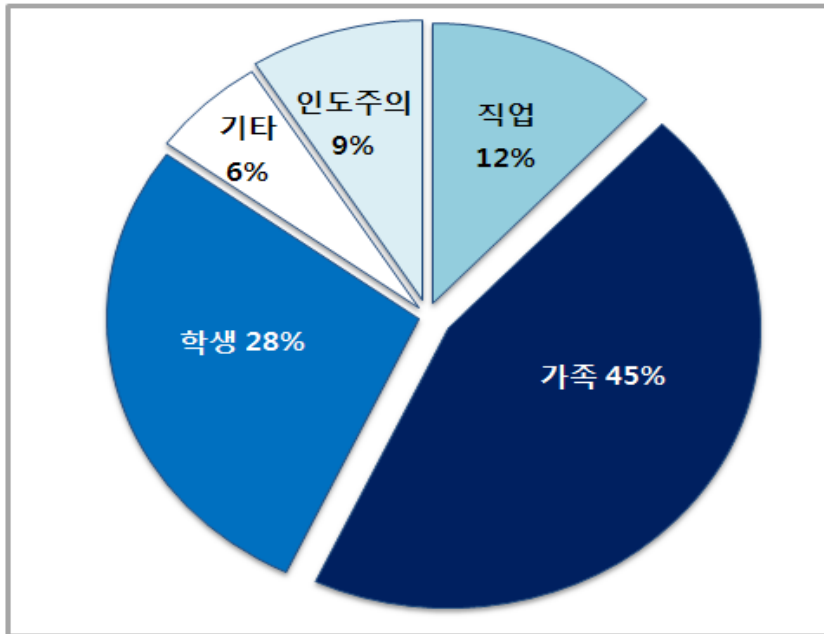
출처 : 프랑스 이민국 (2010).¹³²⁾

프랑스에 적법하게 입국할 수 있기 위한 자격은 비자신청 시 적시하는 사항을 근거로 결정한다. 입국의 자격은 단기의 경우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제한사유를 두지 않고 있으며, 장기의 경우 비자를 통하여 입국자격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현재 프랑스 이민국에서

132) http://www.immigration.gouv.fr/spip.php?page=imprimer&id_article=2173

집계한 대부분의 입국 동기는 가족 등에 대한 방문을 주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 유학을 위한 학생, 근로 등 직업과 관련되거나, 망명 등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부여되는 경우의 순이다.

2008년 현재 교부된 최초 입국동기의 비율



출처 : 프랑스 이민국 (2010).¹³³⁾

① 원칙

프랑스는 원칙적으로 출입국에 비자를 요하는 국가에 속하지만, 1985년 쉥겐 조약이 체결된 이후,¹³⁴⁾ 유럽 내 일정 국가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133) http://www.immigration.gouv.fr/spip.php?page=imprimer&id_article=1961

134) 쉥겐 조약(Schengen agreement, 혹은 쉥은 조약)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경시스템을 최소화해 국가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약을 말한다. 이 조약은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5개국에 의해 1985년 6월 14일에 프랑스,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룩셈부르크의 작은 도시 쉥겐 근처 모젤 강에 떠있던 선박 프린세스 마리-아스트리드 선상에서 조인되었다.

비자를 면제하고 있다.

셱겐 조약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정책을 사용하여 국경 시스템을 최소화해 국가 간의 통행에 제한이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약을 말한다. 이 조약의 목표는 ‘셱겐 국가’ 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셱겐의 영역 안에서는 국경검문소 및 국경검사소를 폐지하는 데에 있다.

셱겐 국가는 유럽 연합과는 별개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셱겐 지역 내에서는 3개의 EU 비가입국이 있어 2개의 EU가입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EU의 비중이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아일랜드와 영국을 제외한 모든 EU가입국과 EU 비가입국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총 28개국이 조약에 서명하였고, 그 중 24개국이 조약을 시행하고 있다. 셱겐 조약 가맹국들은 국경 검사소 및 국경검문소가 철거하고, 공통의 셱겐 비자에 의해 본국에서 다른 각국에 대한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셱겐 가입국은 하나 아니면 복수지역에서는 모든 가맹국에 대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단기체류를 위해 통일된 비자에 관련된 상세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셱겐 비자에는 통과용, 단기체류용, 여행용이 있고, 나라에 따라서는 비자면제국도 있다.

셱겐 비가입국의 국민은 셱겐 지역 내에서의 체류기간이 제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최초 입국한 날부터 180일 사이에 최대 90일간의 체류가 인정된다. 180일 사이에 여러 번 셱겐 지역을 출입하는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 몇 차례의 비자가 승인되며, 이 시기 셱겐 지역에서의 체류 허용기간은 총 90일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현지 공장을 자주 방문하는 한국 국민이 4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서울을 오가며 프랑스에서 체류한 기간이 누적으로 3개월이 되었다면, 비셱겐 국가에서 반드시 2개월을 체류하여야만 다시 셱겐 국가인 프랑스로 입국이 가능한 것이다.

② 비자취득 절차

셱겐 비자의 획득에 있어서 여행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a. 주 목적지의 특정

최초 주 목적지로 셱겐 가입국을 하나로 특정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셱겐 비자신청의 판단책임을 가진 국가, 즉 신청에 앞서 대사관 및 영사관을 결정한다. 만약 복수의 나라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셱겐 지역 최초로 입국하는 대사관으로 가서 비자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어떤 나라도 신청자의 나라에 있는 재외공관 및 영사관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통상, 신청자의 나라에 존재하는 그 나라의 대리가 있는 다른 셱겐 가맹국의 대사관 및 영사관과 연락을 취해야 한다.

b. 서류 제출

셱겐 비자 신청서를 책임을 갖고 있는 대사관 및 영사관에 제출한다. 유효한 여권과 만약에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셱겐 지역의 체류 목적과 상황을 기록한 자료(방문목적, 체류기간, 체류장소)를 첨부하고 소정의 기입용지를 제출한다. 또한 체류 중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수단, 즉 생활에 필요한 비용(체류기간 중 경비 및 거주장소, 자국으로의 귀국비용 등)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신청자에게 비자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두설명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출두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다.

c. 비 용

최후로 여행자는 검역을 이유로 본국송환 및 체류 중에 발생된 긴급 의료조치에 관련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최소한 30,000 유로의 여행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2) 체 류

프랑스에 비자면제국의 국민으로서 또는 적법한 비자의 발급을 통하여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는 등의 경우에는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러한 체류증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체류동기(예컨대, ① 단기체류의 경우에는 여행, 사업, 가족 및 친구방문, 스포츠, 공식초청, 의료목적, 학업, 공항이동, 기타, ② 장기체류의 경우에는 직업활동, 학업, 직업교육, 혼인, 의료목적, 가족의 구성, 방문, 본국귀환, 공공업무, 기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 동기는 체류증의 발급여부를 심사하고 변경 또는 철회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된다.

프랑스에서 정해진 일정 기간 이상을 체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류증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체류증은 크게 1년 유효기간의 ‘임시체류증’과, 10년 유효기간의 ‘장기체류증’으로 나뉘어진다. 일반체류증과 장기체류증은 매 1년마다 또는 매 10년마다 각각 갱신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지난 2007년 3월 22일자로 새로 공시된 3년 유효기간의 ‘능력 및 재능체류증’이 있다.

① 임시체류증

임시체류증(Carte de séjour temporaire)에는 프랑스에서의 학업을 위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학생체류증’과 임금근로자에게 발급되는 ‘근로체류증’이 있다.

a. 학생체류증

학생체류증은 프랑스 정부와 협약을 맺은 교육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받아 3개월 이상의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프랑스 정부와 협약을 맺은 교육기관의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 프랑스 정부장학생, 외국의 프랑스 교육기관에서 바카로레아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적어도 3년 이상 외국의 프랑스 교육기

관에서 수학한 자, 학생체류허가에 관해 프랑스와 상호협정을 맺은 국가의 거주자에게 발급된다.

학생체류증을 소지한 자는 법정 연간노동시간의 60%, 즉 1년당 964 시간 내에서만 노동활동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체류증이 철회된다.

b. 근로체류증

근로체류증은 직업활동의 수행이 허가된 임시체류증으로서, 프랑스 노동법전 제341-2조에 규정된 근로계약 권리자와¹³⁵⁾, 동 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직업활동 수행자, 상업, 공업 또는 수공업의 활동을 수행하는 자,¹³⁶⁾ 프랑스 밖에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프랑스 노동법전 제122-1조 제3항에 규정된 계절근로자,¹³⁷⁾ 프랑스 밖에 있는 고용주에 의해 파견된 근로자¹³⁸⁾에게 부여된다.

c. 능력 및 재능 체류증

능력 및 재능(Compétences et Talents) 체류증은 지속적이고 광목할만한 정도의 경제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거나 국위선양을 위한 능력 및 재능을 지닌 외국인으로서 지식인, 연구자, 과학자, 문화인 또는 스포츠인 등을 통하여 국위선양의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게 발급된다. 각 분야에서 유능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전 세계적 노력에 상

135) 임시 임금근로자 체류증은 12개월 이하의 기간에 대하여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만일 근로계약 갱신 3개월 전에 고용주에 발생한 사유로 노동계약이 단절되는 경우, 1년 유효기간의 임시체류증이 새로이 발급된다.

136) 이들은 공중보건, 위생,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경제적 생활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들은 각각의 직업활동에 따른 임시 근로체류증을 받게 된다.

137) 이들에게 주어지는 체류증을 가지고는 12개월 중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노동할 수 없다. 이 체류증은 최대 3년의 유효기간이 갱신 가능하다.

138) 여기서의 파견은 동일기업이나 동일그룹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야 하며, 총 근로임금은 적어도 최소임금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파견근로자체류증이 발급된다. 이 체류증은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며, 언제든지 프랑스 내에 있는 동일기업이나 동일그룹사로 편입될 수 있다.

응하여 프랑스도 2007년부터 이를 위한 각종 제도의 신설과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체류증은 현지 이주를 원하는 기술자 및 예술가 뿐 아니라 현지 투자자, 소규모 기업의 주재원 파견 예정자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밖에도 다양한¹³⁹⁾ 체류증 발급을 통하여 고급 외국 인력의 프랑스 체류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체류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외국인이 우선협력지역 회원국의 국민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갱신이 가능하다.

② 장기체류증

장기체류증(Carte de résident)이라 함은 10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며 갱신이 가능한 체류증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내에서 지속적으로 3년 이상의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행정당국이 신청의사에 따라 생계능력 및 정착동기 등을 심사한 후 거주증을 발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일반적인 요건 외에 특수한 개별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장기체류증을 신청할 자격을 가진다.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 프랑스인의 배우자로서 혼인 후 최소 3년간 동거사실을 입증한 자
- ii) 프랑스 국민을 부모로 두고 있는 20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
- iii) 프랑스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외국인 부모
- iv) 프랑스 내 직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연금 수혜자

139) 이러한 체류를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 체류증의 유형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능력 및 재능” 체류증 (La carte “compétences et talents”), ② “급여 및 일 시근로자” 체류증 (La carte “salarié et travailleur temporaire), ③ “상사주재원” 체류증 (La carte de séjour temporaire “salarié en mission”), ④ 간부 또는 고급직을 위한 “상사주재원” 체류증 (La carte “salarié en mission” pour les cadres dirigeants ou de haut niveau), ⑤ “과학 활동”을 위한 체류증 (La carte de séjour temporaire “mention scientifique”) 등이 있다. 자세한 것은 Ministère de l’immigration, de l’intégration, de l’identité 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 solidaire, “LES MESURES ORGANISATION L’IMMIGRATION PROFESSIONNELLE”, 2010.

- v) 가족의 결합을 이유로 프랑스 체류가 허가된 거주증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vi) 프랑스 군 전투대원으로 복무한 자
- vii) 프랑스 정부 군 소속으로 전투에 참가한 자
- viii) 연합군 전투부대원으로 복무한 자
- ix) 프랑스 외인부대원으로 3년 이상 복무한 자로서 행실이 좋은 자
- x) 망명자의 지위를 받은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 xi) 무국적자로서 3년 이상 프랑스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하였음을 입증한 본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xii) 10년 이상 합법적 체류를 입증한 경우(학생체류자격은 제외한다)
- xiii) 임금근로 임시체류증 소지자로서 5년간 프랑스에 체류한 사실을 입증한 자이다.

장기체류증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의 국외체류가 불가능하다. 장기체류증 소지자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프랑스 출국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 그 사유가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일단 장기체류증이 발급되면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이 정당화되며, 취업과 의료보험의 혜택 등에 있어서 프랑스 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참정권과 같이 국민으로서 누리는 적극적인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기체류증은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일단 반납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신청자로서 취급된다. 그리고 장기체류증이 취소된 경우 새로운 신청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장기체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기체류증의 요건이 충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③ 불법체류

불법체류라 함은 비자와 관련된 경우와 체류증과 관련된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비자와 관련하여 각국이 입국 시에 요구하는 사항, 예컨대 거주확인증, 초청장, 호텔예약증, 보험증서 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로서, 이는 비단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예라고 할 수 있다(non-admission).

이렇게 비자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경우 일정한 대기구역(zone d'attente)에 억류된다. 대기구역에의 억류 결정은 행정청에 의해 작성되고, 결정되며, 통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관계자는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망명신청을 할 수 있고, 변호자를 선임하거나 그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또한 공인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체류증과 관련하여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체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체류증의 기간이 만료하고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불법체류의 예에 해당한다. 이 경우 외국인은 행정억류소(CRA, centre de rétention administrative)에 유치된다. 다만, 이것이 행정형벌은 아니다. 억류기간은 최장 32일까지 가능하며, 평균 11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불법체류에 해당하거나 체류증에 명시된 체류의 이유가 소멸된 경우 프랑스 영토를 떠나려는 법정 명령인 추방명령을 받게 된다. 불법체류로 적발되어 추방명령을 받아 프랑스 영토를 떠나는 자는 프랑스 재입국시 입국이 거부될 수 있고 재입국을 위한 비자신청 시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본국의 의사에 따라 경제적 지원 하에 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

불법체류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의료혜택 등의 처우에는 변함이 없으며,¹⁴⁰⁾ 프랑스 사회보장법상 비EU회원국 국

140) 프랑스 의무교육연령은 만 16세까지이며, 초중고등학교 입학의 경우 비자 및 체류증 제출의무가 없어 불법체류자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민의 경우 체류증 소지자에게만 사회보장제도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서 불법체류자는 가입을 할 수 없으나, 국가의료지원제도(Aide Medicale d'Etat) 상의 기초의료지원 수혜는 가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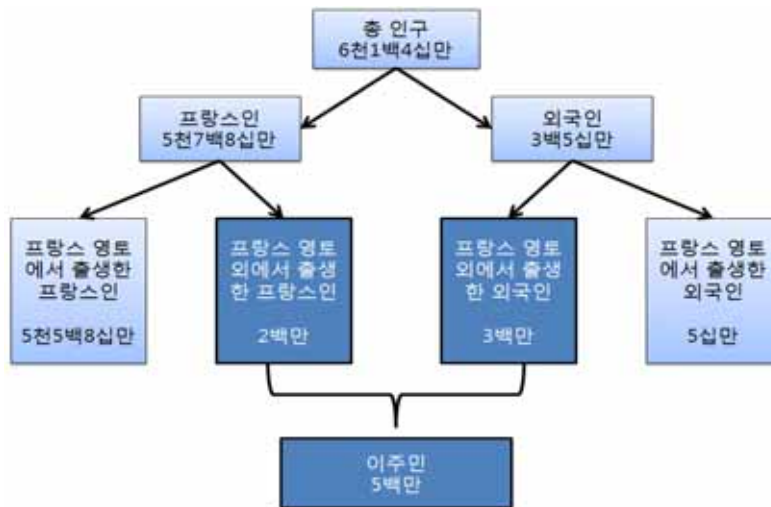
3. 국적취득 관련 법제

프랑스의 총 인구는 프랑스인과 외국인으로 대별할 수 있고, 프랑스인이라 하는 국적의 취득은 속지주의(프랑스 영토 내에서 출생) 또는 속인주의(프랑스인으로부터 출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프랑스인과 이주민의 자격은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주민인 경우가 있으며(프랑스 영토 외에서 출생한 프랑스인), 외국인으로 분류되더라도 프랑스 국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프랑스 영토 내에서 출생한 프랑스인).

국적에 따른 프랑스 거주자의 수

(2006년 1월 1일 현재)



출처 : 프랑스 이민국(2010).¹⁴¹⁾

141) http://www.immigration.gouv.fr/spip.php?page=imprimer&id_article=1458

1) 취득 방식

프랑스 국적법은 프랑스 국가가 창설된 때로부터 존재하여 온 오래된 분야이다. 이는 프랑스의 인구학적, 경제적 및 정치적 이익과 함께 발전하여 왔다. 가장 기본적인 법령으로 프랑스 국적의 선언, 귀화결정, 프랑스 국적의 재취득, 상실, 박탈, 취소 등에 관한 1993년 12월 30일자 데크레 제93-1362호가 있다.

외국인의 프랑스 국적취득의 약 95%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하여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법원에) 신고하는 경우와, 프랑스인과 4년 이상 동거하였음을 (법원에 신고 또는 담당 장관의 요청으로 국무총리 데크레에 따라) 입증하는 경우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① 프랑스에서의 출생 및 거주에 의한 취득

i) 이는 1889년 6월 26일자 법률에 기원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는 자는 통합의 대상이 되며 프랑스인이 될 자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1998년 9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 태어난 외국인은 만 18세가 되어야 프랑스인이 될 수 있으며, 11세 이후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프랑스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는 성년의 시점에서 프랑스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으며 11세 이래로 최소한 5년 이상 프랑스 내에 계속적 또는 비계속적인 상시적 거소를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 또한 16세 이후부터 이들 프랑스 내 출생 및 거주자는 지방법원 지원에 신고함으로써 프랑스 국적을 미리 취득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출생한 자의 부모는 그의 아동이 13세에 이르고 8세부터 프랑스에 거주하여 온 경우에는 그의 동의에 따라 프랑스 국적취득을 위하여 사전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경우 성년에 프랑스 국적을 가지게 된다((민법전 제21조의7 내지 제21조의11)).

② 혼인을 이유로 한 신고에 의한 취득

이는 프랑스인 및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자와의 혼인으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프랑스인과의 혼인에 대한 신고는 최소 4년의 공동생활(vie commune)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동거) 조건은 필요한 것이며, 이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즉 국적 신고 시, 부부는 물질적으로 뿐 아니라 정신적인 공동생활을 영유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프랑스 배우자는 이러한 국적을 취득하고 있어야 한다. 혼인 전후 둘 사이에서 태어난 친자의 존재는 2006년 이후부터는 혼인의 기간이라는 조건에 대하여 더 이상 예외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프랑스 언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혼인 이해 부부간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공동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며, 좋은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민법전 제21조의1 내지 제21조의6).

③ 공공기관의 결정에 의한 국적 취득

공공기관의 결정에 의한 프랑스 국적 취득은 외국적인의 청구와 데크레에 의하여 인정되는 귀화에 의한다. 민법전 제21조의15 내지 21조의25의1은 이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1조의18, 제21조의19 및 제21조의20에서 정하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5년 이상 일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거주하여야 하고, 프랑스 공동체에 동화되어 있어야 하고(예컨대, 개정 민법전 제21-24조가 언급하고 있다시피, 프랑스 언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 또는 프랑스 국적취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 법원에 의해 형이 선고된 적이 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귀화 및 국적회복은 법이 예정하고 있는 “권리”는 아니다. 따라서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신청은 얼마든지 반려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긍정적인 회신은 70% 정도이다.¹⁴²⁾

2) 효과

일단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집단적 효과(effets collectifs)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부모 중 일방이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미성년의 미혼인 자(子)는 자동적으로 프랑스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

또한 프랑스화(francisation) 신청은 프랑스 국적취득의 신청과 동시에 외국인의 성과 명을 프랑스식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한다. 이에 관하여는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고 회복하거나 확인하는 자의 성과 명의 프랑스화에 관한 1972년 10월 25일자 법률 제72-964호가 있다.

4. 소 결

프랑스는 이주민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여도 무방할 만큼 외국인 또는 이주민이 많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방인이 다른 국가에서와는 달리 프랑스의 정체·경제·사회·문화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프랑스의 일부로서 포섭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의 자체적인 퐁레랑스의 문화도 기여한 바가 없진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노력한 동화정책과 이주민 대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점차 이주민과의 분쟁이 잦게 발생하고 있고,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우익 정당의 강세로 예전처럼 이주민에게 관대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특별하게 프랑스의 국익

142) Département des statistiques, des études et de la documentation, “Infos migrations”, Étude, n° 16, août 2010, p. 5.

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이들을 유치하고자 하지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딱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주민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표현으로 압축될 수 있다.

이는 최근에 도입된 능력과 재능 체류증 발급제도를 통하여 뚜렷하게 드러난 현상이기도 하다. 엄격한 체류조건 등으로 인하여 현지 비자발급이 안되어 프랑스에 진출조차 못하고 있던 여러 국가의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프랑스의 대한 투자 및 경제활동을 촉진하게 함으로써 이주외국인 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까지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 프랑스 정부가 능력 있는 외국인의 유치와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자발급 및 체류증 발급제도에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자격의 지나친 세분화와 엄격성(출입국관리법 제12조관련 별표 1)은 자칫 폐쇄적이고 경직된 국가 이미지로 비추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범망을 피한 불법체류의 가능성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체류자격의 조건과 유형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불법적인 출입국은 엄격하게 제한하되, 가능한 한 여러 방면의 이주민을 정당한 방법으로 포용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사례가 최소화 되고 사회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떠한지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과 법제의 변화를 통하여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외국인 국적 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적취득과 영주권제도의 연계

국적취득을 영주권제도의 정비와 연계하여 국적취득을 영주권취득과 국적취득의 선택사항이 되게 해야 한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가진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영주권 취득시 이미 영주권취득 희망자에 대한 상세한 심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안전을 해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정도의 선서를 통하여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적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영주권의 확대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영주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영주권을 폭넓게 인정하여 거주기간, 수입, 보험, 언어, 거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우수인재들에게 직장이전의 사전허가제를 개정하여 사후 신고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적법」에서는 이들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귀화를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수인재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영주권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영주자격자의 권리·의무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체류자격의 하나로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영주자격을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둔 영주권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3. 결혼사증제도 개선

특정국가 국민과의 결혼 희망자에 대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제도화 및 결혼사증과 연계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사증발급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신설로 정상 혼인관계 유지, 별거, 이혼, 배우자 사망 현황 등 정책대상 자료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결혼 다수 대상국가의 사회제도·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의 추가 등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4.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합법화 문제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고용허가제에 의해 이주한 이주노동자에게는 「출입국관리법」상의 비전문취업사증(E-9)이 부여된다. 정부의 이주노동자의 정주를 불허하는 단기 순환 정책으로 인해 비전문취업사증의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으로 제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주노동자중에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이주 노동 남성 및 여성의 정착 배제 정책은 외국인의 사회통합정책에 배치된다는 점이다. ② 결혼이주에 대하여 국적취득 요건을 간이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하고자 하는 정책과도 대비된다는 점이다. ③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의 법적 지위의 취약성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점이다. ④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쟁점 또는 과제로서

는, 우선 고용 허가제의 도입에 의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었던 불법 취업자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⑤ 3년의 체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일단 출국하면 재입국할 수 있는 점에서 고용 허가제의 원칙에 반해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가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이다. ⑥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점에 대한 비판, 임금 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 때문에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합법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거주기간, 언어능력, 언어강좌 수강, 취학 자녀, 잠재적 기여자 등을 기준으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장 최근인 2003년에 체류 4년 미만의 미등록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합법화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다.

5. 복수국적제도 관련 개선

복수국적의 특혜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국적법 부칙 제2조는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i) 먼저 남자는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국적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부칙 제2조제1항).

국적취득을 영주권제도의 정비와 연계하여 국적취득을 영주권취득과 국적취득의 선택사항이 되게 해야 한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가진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을 원하

는 경우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영주권 취득시 이미 영주권취득 희망자에 대한 상세한 심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국가안전을 해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정도의 선서를 통하여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적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i) 또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던 자가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부칙 제2조제2항). 이러한 특례조항은 과거에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던 계층에 특혜를 주는 규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확한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ii) 원정출산자 개념의 재정리가 필요하다.

개정국적법은 원정출산으로 인해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이 된 자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국적법은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원정출산자로 그 자는 복수국적의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2010년 9월에 입법예고한 국적법 시행령(안) 제16조의2는 원정출산에 대한 구체화를 하면서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중”이란 기본적으로 출생 당시에 모가 해당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이라고 정의한 후, 자녀의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등 광범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10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기득권자들에게만 출생으로 인한 복수국적이 인정될 우려가 있다.

iv) 복수국적자의 국적상실결정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정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에게 국가안전, 사회질서유지 등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적법 시행령(안)에서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국적상실을 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범죄로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6. 결혼이주자의 체류제도 개선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결혼이주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별표1)에 따라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받으며, 2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F-5)’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또한 국적법에 따라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등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다.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국내 체류 중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국민의 귀책사유로 이혼 또는 별거한 경우, 국민의 배우자인 거주(F-2)자격의 지속적인 적용이 곤란하므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¹⁴³⁾에 의해 체류허가(F21)를 해주고 있다.

현재 결혼이주자중 특히 여성결혼이주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이들은 문화적 차이, 의사소통 문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11,692건으로 2009년 총 이혼건수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주자가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143) 체류심사과-4135(2005.9.22), 시행일 2005.9.25

이에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관리지침』에 따라 배우자인 외국인이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도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체류기간 연장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지침’에 의한 보호가 아니라 아래 표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에 직접 규정하여 보호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민·형사상 권리구제 절차 진행의 사실만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해주는 것은 불필요한 고소 및 소송 제기 등의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	
<신 설>	<p>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p>

7. 외국인 이주자의 한국출생 아동의 법적 보호

i) 국적법은 국적취득에 있어서 속인주의(혈통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 한하여 아동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합법적으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합하여 출생한 2세의 법적 지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며, 이점에서는 한국인간의 결합에서 출생한 2세와 차이가 없다.

ii) 그러나 이러한 속인주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아동이 영국에서 태어나 10세까지 거주하면 부모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국적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프랑스도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도 국적취득의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여 속인주의의 대표국으로 꼽혔었는데 국적법을 개정하여, 속지주의를 도입하였다.

iii) 현행법제하에서 생산기능직 종사자인 이주노동자는 입국 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가족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용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은 이주노동자의 한국에서의 임신·출산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의 지위는 취약하고, 국적법이 채택하는 속인주의(혈통주의)원칙 때문에 한국에서 출생한 이주노동자 아동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아동은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없으므로 태어남과 동시에 불법체류자가 되는 셈이다. 미등록 이주 아동은 ‘미등록’, ‘미국적 취득자’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보장혜택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있는데, 이러한 실태는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iv) 따라서 한국에서 출생한 이주노동자 자녀가 출생과 더불어 한국사회로부터 건강한 양육과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신분기반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국적법」상 국적취득의 요건을 완화하여 일정기간 거주한 이주아동에 대해서 국적취득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의 검토이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거주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아동은 부모와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에 이주아동의 미등록 부모의 문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셋째,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속지주의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한국국적과 아동의 부 또는 모의 국적이 모두 부여되고, 아동이 일정한 연령에 달할 때까지 복수국적을 유지하다가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안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홍진, “프랑스 이중국적에 관한 제도와 법령”, 『(최신)외국법제정보』, 2008-6호, 한국법제연구원, 4~8쪽
- 권영설, “이주와 국적의 법과 다문화주의”, 『미국헌법연구, 제20권 2호(2009년 9월)』, 미국헌법학회, 1~57쪽
- 고상두·하명신, “다문화 시대 독일의 시민권 변화 :개정국적법 및 이민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0집 1호(2010년 3월), 한국국제정치학회, 421~443쪽
- 김상겸, “국민의 의미와 이중국적의 문제”, 『OK times : Overseas Koreans times』, 통권 제175호(2008년 6월), 해외교포문제연구소, 10~14쪽
- 김현희, “프랑스의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각국의 법제 현황과 과제』(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2010.11.23), 주제발표문, 65~94쪽
- 설동훈, “미국 의회의 이민법 개정 시도와 좌절 2004~2007년(하)”, 『법조』, 제57권 제1호(2008년 1월), 법조협회, 286~318쪽
- 신옥주, “독일의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각국의 법제 현황과 과제』(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2010.11.23), 주제발표문, 3~31쪽
- 양미애, “프랑스 이주민 갈등과 통합 -마그렙(Maghreb) 이주민을 중심으로-”, 『프랑스학연구』, 제45집(2008. 8. 15), 267~285쪽
- 오승규, “프랑스 이민법 개정”, 『(최신)외국법제정보』, 2008-2호, 한국법제연구원, 61~64쪽

참고문헌

- 유성진 · 김희강 · 손병권, “2007년 미국 이민법 개정 논쟁 : 과정과 합의 그리고 미국의 다원주의”, 『미국학논집』, 제39집 제3호(2007 겨울), 한국아메리카학회, 139~172쪽
- 이금로, “복수국적 허용의 국적법 개정과 의의”, 『홍익법학』, 제11권 제2호 (2010년 6월),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97~126쪽
- 이종수, “최근의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논의에 관한 비교법적 시론”,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1호, 2009.2, 523~538쪽
- 이주·동포 정책연구소 편집부, “복수국적 허용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국적법』 일부시행안 바로 시행”, 『미드리』, 제2호(2010년 6-7월호), 이주·동포 정책연구소, 58-65쪽
- 최영란, “미국의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 『외국인의 국적취득 및 체류에 관한 각국의 법제 현황과 과제』(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 2010.11.23), 주제발표문, 33~64쪽
- 최윤철, “대한민국 국적법의 현황과 문제점”, 『일감법학』, 제17호(2010년 상반기), 이호문화사, 3~35쪽
- 최홍엽, “무국적관련 국제협약과 한국법의 비교”, 『민주법학』, 통권41호 (2009년 11월), 관악사, 313~347쪽
- 홍강훈, “독일 외국인법과 이주법을 중심으로”, (최신)외국법제정보 2007-7, 한국법제연구원, 4~12쪽
- Ministère de l'immigration, de l'intégration, de l'identité nationale et du développement solidaire, “LES MESURES ORGANISATION L'IMMIGRATION PROFESSIONNELLE”, 2010.
- Département des statistiques, des études et de la documentation, “Infos migrations”, Étude, n° 16, août 2010.

<http://www.immigration.gouv.fr>

<http://www.legifrance.gouv.fr>

<http://www.dhs.gov/xabout/structure/>.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extoid=2af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
&vgnnextchannel=2af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eb1d4c2a3e5b9ac89243c6a7543f6d1a/?vgnextoid=2af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vgnnextchannel=2af2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

<http://www.ice.gov/about/overview/>.

<http://www.ice.gov/about/offices/homeland-security-investigations/>

<http://www.uscis.gov>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 ‘Laws’ 메뉴 참조).

<http://www.dhs.gov/files/laws/immigration.shtm>.

<http://www.dhs.gov/files/laws/immigration.shtm>. “Public Laws Amending the
INA”

<http://www.jessenlaw.com/US-Immigration-U-Visa.aspx>.(2010.11.12. 최종방문).